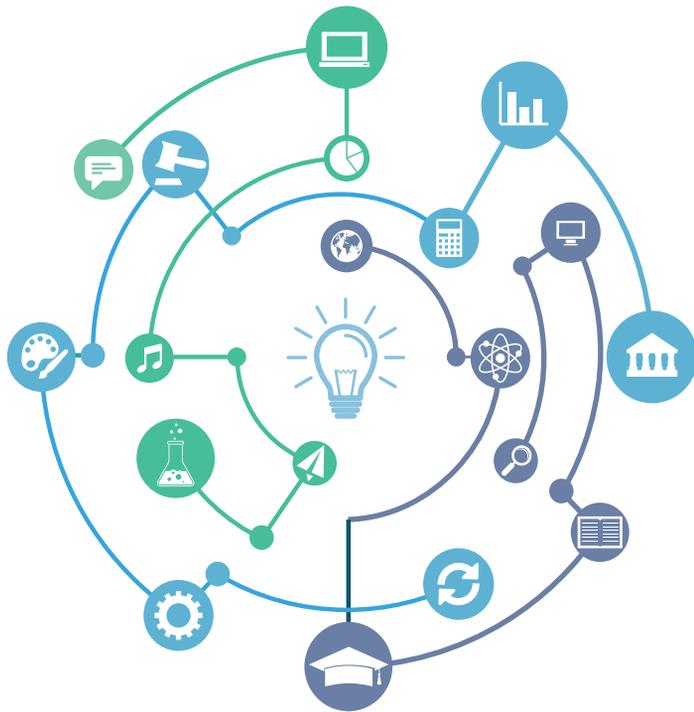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2019.12.



일러두기

- 본 사례집에 수록된 민원 질의·회신 사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한 것입니다.
-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거나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 등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인용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으로 적용 시점에 따라서는 본 사례집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유아·특수교육

Y 유아교육

- 1. 지방자치단체의 매입형유치원 운영 가능 여부 3
- 2. 감사 거부 유치원에 대한 폐쇄 인가 4
- 3. 유치원 CCTV설치 의무화 5
- 4. 원비인상률 산정방법 6
- 5. 유치원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7

Y 전화민원

- 6. 예방접종 관련 유치원 입학 허용 여부 8
- 7. 유아학비 지원청 문의 9
- 8. 유치원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문의 9
- 9.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문의 10
- 10. 유아학비 지원 대상 제외 기준 11
- 11. 유치원 원장과 원감의 교원능력개발평가결과 열람 여부 12

Y 특수교육

- 12. 2020학년도 공립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13
- 13.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 교사에 대한 조치 14
- 14. 사회복지무요원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15
- 15.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 16



II 초·중등교육

Y 교육과정

1. 학생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 교과 누락	19
2.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 건의	20
3. 체육과 평가기준 온라인 열람 허용 요청	21
4. 검인정교과용도서 채택현황 문의	21
5. 교과서 전자원문 배포 요청	22
6. 초등학교 전학생의 생활기록부 정정	23
7.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및 발명특허 기재	24
8. 평가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24
9. 학교 수업 녹음 가능 여부	25
10. 더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요청	26
11. 초등생존수영교육 의무화	27
1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진로상담 관련 교사 자격 취득 및 임용 방법	28
13. 학생 진로와 적성 맞춤형 교육 제공 요청	29

Y 전화민원

14.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30
15. 학교 휴업일에 학교 행사 가능 여부	30
16. 휴업일 명칭 등	31
17.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32
18. 독서활동상황에 논문 기재 가능 여부	33
19. 외국인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 나이스 연계 문의	33
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가능한 기술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선정기준	34

Y 교육복지

- 21. 해외교육기관의 고졸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35
- 22. 귀국학생의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36
- 23. 학력인정학교 목록 추가 요청 37
- 24. 고교무상교육 37
- 25. 고교무상교육 특목고 역차별과 직장 학비 지원 중단 38
- 26. 초등돌봄교실 신청시 구비서류 39
- 27. 야간 자율학습 시간 단축 및 희망에 의한 보충수업 실시 건의 39

Y 전화민원

- 28.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 방법 문의 40
- 29. 해외 학교의 학력 인정 여부 확인 41
- 30. 당해연도 졸업자의 1회 검정고시 응시가능여부 41
- 31. 2020년도 검정고시 출제범위 42
- 32.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중복 수급 42
- 33.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 문의 43

Y 학생지원

- 34. 신원 미상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폭법 처분 여부 44
-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45
- 36.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관련 46
- 37. 학교 공기정화장치 사용 기준 관련 47

Y 전화민원

- 38.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다국어 지원 48



Y 학교제도

39. 학교 선택의 권리 보장 및 혁신학교 관리	49
40. 비인가 대안학교의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여부	50
41. 폐교활용법 상 수의계약 대상자 여부 질의	51
42. 학교 설립 계획 관련 문의	52
43. 도시개발사업 시행결과 증가한 가구수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여부	53
44. 학교용지법 상 학교용지에 유치원 부지 포함 여부	54
45. 학교발전기금 접수의 교육청 일원화 건의	54

Y 교원복무·징계

46. 교원의 수업일 및 휴업일 복무 처리	55
47. 방과후학교 지도에 따른 교사 복무 및 수당 지급	56
48. 주말 및 공휴일에 공무외 국외여행 시 복무 처리	57
49. 휴가 일수 산정	58
50. 수업일 중 연가 사용	59
51. 다음 연도 연가의 미리 사용	60
52. 휴직 후 복직 시 연가 일수 산정 방식	61
53. 공휴일이 시작일인 병가의 시작일 산입 여부	62
54. 누적한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한 경우의 진단서 제출	63
55. 난임 사유의 병가 사용 여부	64
56.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65
57. 육아시간 산정방식	66
58. 육아시간 사용 시 초과근무 가능 여부	67
59. 교육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여부	68
60. 자녀돌봄휴가 사용	69
61.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시 제출서류	70
62. 유학휴직 연장 가능	71

63. 해외 공립학교 고용휴직 가능 여부	72
6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73
65.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74
66. 휴직 중 대학원 수학 및 학위 평정 가능 여부	75
67. 대학 강의로 인한 교사의 휴직 가능 여부	76
68. 가사(간병)휴직 사유	77
69. 휴직 중 겸임 가능 여부	78
70. 교사 유튜브 활동 관련 복무지침	79
71.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에 광고 삽입 시 검직 처리	81
7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2
73. 기간제교원 경력증명서 발급 간소화	83
74. 교사가 학교 업무를 맡아야 하는 근거	84

Y 전화민원

75. 건강검진 재진료의 공가 사용 여부	85
------------------------------	----

Y 교원자격·복지

76. 교육실습 면제의 가능 범위	86
77.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방법	87
78. 기본이수과목 중복인정 여부	87
79. 실기교사자격 발급 방법	88
80. 교육봉사활동인정 가능 기관	88
81. 교원능력개발평가 익명성 보장 여부	89
82. 사학 연금 대상자 및 수령 시기	89
83. 학교법인 운영의 수익사업체 직원의 사학연금 적용 여부	90
84. 사학연금 미불입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91
85. 근로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적 직무 해당 여부	92



86. 사학연금 의무가입 여부	93
87. 퇴직급여 소멸시효	94
88.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질의	95

Y 전화민원

89. 표시과목 변동에 대한 적용년	97
---------------------------	----

III 교육안전정보

Y 학생안전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자율등교 조치 요청	101
2. 학교안전사고 통계 문의	102

Y 교육정보

3. 정원외 관리 증명서(초, 중) 민원발급	103
4. 전국 초등학교 수 문의	104

Y 전화민원

5. 나이스 홈에듀민원서비스 발급 서류의 인정 여부	105
------------------------------------	-----

Y 교육시설

6. 기숙사 긴급 구조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관련 수의	106
7.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수정 요청	107
8. 학교석면 관리(무석면학교 인증) 질의	108

9. 교육환경보호구역내 PC방 관련 문의	109
10. 대규모 건축의 교육환경평가 대상여부	110

Y 전화민원

11. 석면해체공사 기준 문의	111
------------------------	-----

IV 고등교육

Y 대학 학사·제도

1. 학점포기제 부활 건의	115
2. 원격수업 운영규정 관련 문의	116
3. 대학 내 집단 문화 개선	116
4. 이중학적에 관한 문의	117
5.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118
6. 국가장학금 신청기준 및 지원내용	119
7.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20
8. 대학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	121
9.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여부	122
10.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 수당 지급 가능 여부	123
11. 사립대학교 법인 감사 관련	124
12. 사립대학교 교수회 운영비 지급 관련 문의	125
13. 학교법인 소속 직원의 겸직 여부 및 급여 안분 지급 관련 문의	126
14. 사립학교 직원 선	127
15. 법인 이사회 심의사항 여부	128
16. 사립 전문대학 교원의 집단행위	129



17. 입학 당시와 다른 학과명 졸업 가능 여부	130
18.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위	131
19. 대학생 현장실습생 운영 관련 문의	131
20. 계약학과 학위취득 관련 문의	132
21. 대학생 현장실습의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	133
22. 창업지원 정책 문의	134

☞ 전화민원

23. 학자금대출 상환 면제기준 관련	135
24. 사립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135

☞ 대학 인사·복무

25. 명예교수규칙 해석 관련	136
26. 교육공무원 성범죄 징계시효 관련 질의	137
27.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관련 문의	138
28. 사립대학 교원 육아휴직 관련	139
29. 원어민 교수 임용 요건	140
30.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제한 관련 문의	141
31. 교육공무원 호봉 확정 관련 문의	142
32. 사립학교 교원 퇴직 관련	142
33. 대학교원 겸직 허가 관련 문의	143
34. 교육공무원 조교 업무대행수당 적용 여부	144

☞ 전화민원

35.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	145
36. 시간강사 계약 시 개인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145

Y 대입제도

37. 외국인특별전형 지원자격	146
38. 농어촌특별전형 지원 자격	147
39. 대입전형료 환불 기준	148
40. 실기·논술고사·면접 일정 중복	149
41.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150

Y 전화민원

42. 이종등록 위반 여부	151
43. 수시 합격 후 정시 복수지원 금지 관련	152
44. 2020년도 특성화고 특별전형 기준학과 정보 문의	153
45. 수시 접수횟수 제한 관련	154
46. EBS 연계교재 사용연도 관련	154
47. 2021학년도 수능 범위	155

V 평생교육

Y 평생교육

1. 교습소 강사 채용 가능 여부	159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과외교습 행위 문의	160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기능사교육 실시 가능 여부	161
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영어캠프 운영 등	162
5. 만36개월 미만의 유아의 학원, 또는 평생교육원에서의 교육가능 여부	163
6. 학원 선행학습 금지 요청	164
7. 유학원 등록 문의	165



8.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 시 예금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165
9. 민간자격증 인정 관련	166
10. 대학 캠퍼스 이외 시설 평생교육프로그램 진행 문의	167

Y 전화민원

11. 학점은행제 학위 관련 질의	168
12. 전환된 자격증 재교부 신청 문의	169
13. 학점인정 부정 취득 시 취소 통지	169
14. 교습소 보조요원 교습보조행위 가능여부	170
15.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관련	171

Y 직업교육

16.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전담노무사제 도입 관련 질의	172
17. 취업지원관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2년이상 계속 근로 문의	173
18.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	174
19.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을 위한 절차 안내 요청	175
20. 한국장학재단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관련	176

VI 기타

Y 기타

1. 논문 표절 검증 요청	179
2. 논문 집필 자격요건 개선	180
3. 부실학회 여부 확인 요청	181
4. 대학도서관 시민 개방 요청	182

5. 외국인학교 교원 자격 및 설립인가조건	183
6.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여부	184
7. 재외한국학교 고용휴직 교사 입증서류 제출 시 공관장 확인 필요 여부	185
8. 유치원 초등생과 학부모들의 성교육 강화	186
9. 대학교인명부의 개인정보법 위반 질의	187
10. 학교 졸업앨범의 개인정보 이용	188
11. 국립부설고등학교 학부모부담금 카드수납 관련	189
12. 학교 홈페이지 내용 이용	190
13. 어디서나 교육민원(팩스민원)의 신청대상 여부	190
14. 외부강의 사전신고 제외 대상 기관 판단 여부	191
15.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학교운영위원회 위원간 선물을 주는 경우)	192
16. 교육부 징계처분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상 여부 및 절차 문의	193
17. 역사는 무엇에 근거하여 알아내나요?	194
18.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출처 자료 문의입니다	195
19. 우리역사넷 '책으로 보기' 화면이 움직이지 않아요	196
20.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일정 추가 요청	197
2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바일접수 및 기초수급자 무료 응시 건의	198
2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험장소 부족 관련	199
23. 국비유학에 관한 규정과 국비유학 공고문에 대한 문의	200
24.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응시 자격	201
25. 교육공무원의 유학 및 파견제도	202
26.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사장 확대 요청	203

전화민원

27. 교육부 『행복한 교육』 배포 문	204
28. 국제학교 인가 문의	204
29.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률 관련 외국교육기관 임용 제한 여부	205



30.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205
31.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식사비 지불 상황)	206
32.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부정청탁 대상직무 외 청탁 가능 여부)	207

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민원처리법)	211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민원처리법 시행령)	227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민원처리법 시행규칙)	247
4.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251
5. 적극행정 운영규정	259

I 유아·특수교육



유아교육

1 지방자치단체의 매입형유치원 운영 가능 여부

질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매입형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나요?

회신

2019-04-19(유아교육정책과)

유치원의 설치·운영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5호가목),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며(동법 제121조제1항),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동법 제121조제2항),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그 관장사무로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0조제5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조).

따라서 유치원의 설치·운영사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시군구가 아닌 시도의 사무에 속하며, 시도지사가 아닌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해석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



질의

감사거부 유치원에 대하여 폐원 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신

2019-04-10(유아교육정책과)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유치원 감사 및 폐원인가는 교육감의 권한에 해당하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안내 드립니다.

3 유치원 CCTV설치 의무화

질의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회신 2019-04-19(유아교육정책과)

우리부는 「유치원의 CCTV 설치 확대」사업을 통해 유치원 CCTV 설치를 지원하였고, 유치원 CCTV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치원 교실 내 유아의 아동학대·안전사고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설치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질의

"2019학년도 원비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70, 2019.1.9.)"과 관련하여, 유치원비 인상 상한률 산정 시 정부지원금은 제외하고 특성화 활동비를 포함하여 계산할 것을 건의합니다.

회신

2019-04-10(유아교육정책과)

원비 인상률 적용시 원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및 특성화활동비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으나,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정부지원금 포함 여부의 적절성, 특성화비 실제 포함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현장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처음학교로에서 공사립을 구분하여 입학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회신

2019-10-28(유아교육정책과)

처음학교로에서 입학 지원을 할 경우 모두 탈락할 수 있고, 대기 등록도 쉽지 않을 수 있어 시스템을 통한 입학의 불편함을 느끼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 및 제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정책을 도입한 16년부터 개선해나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학부모, 교원, 교육청 담당자, 일반국민,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입학 제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공사립에 관계없이 지원횟수를 3회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16년도 시범 이후부터 올해까지 그 적절성에 대해 매년 검토해왔고, 그 결과 3회가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합의된 사항임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입학절차를 이미 경험한 학부모님 대부분도 현행 3회 유지를 찬성하여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를 통한 유치원 입학도 현행 3회 유지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공사립 간 유치원 비율이 다르고 설립유형에 따른 학부모의 요구가 다양함에 따라 설립유형별 지원은 제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탈락율을 경감하기 위해 작년까지는 우선·일반모집 등록자도 추가모집에 재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우선·일반모집 에서 모두 탈락한 자에 한해서만 추가모집 접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전화민원

6 예방접종 관련 유치원 입학 허용 여부

질의

유치원 필수예방접종을 다 안했을 경우 유치원에서 이 유아에 대한 입학은 불허 할 수 있습니까?

회신

2019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필수예방접종을 안했을 경우 유치원의 입학에 제한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2016년도 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11, 12p에 따라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을 유치원에서 관리하도록 권장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미확인 유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접종 안내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사항을 전산에 등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유아학비 지원청 문의



질의

울산지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취학 통지서 때문에 주소를 먼저 경기도 지역으로 옮기고 유치원은 울산에서 다닐 경우, 울산교육청에서 유아학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유아학비는 해당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 관할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울산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주소지 이전과 관계없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유치원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문의



질의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회신

2019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서 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대상은 운영자와 운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의거 교육활동 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청과 소급 지원 여부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법정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지원자격 해당여부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신청 후 자격이 확인되는 달에 대한 소급지원도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는 신청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의

유아학비 지원 대상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근거규정)에 따른 지원 제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제외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예) 3월 1일 출국 후 4월 7일 귀국한 A아동의 자격은 3월 31일부터 중지(3월 30일까지 지원 자격 보유)

질의

유치원 교사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있어 동료교원 평가 시 원장과 원감도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관리자는 평가시행주체인 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관리자는 평가결과를 수합하고, 통계처리, 자료의 보관 및 분류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까닭에 원장과 평가관리자인 원감은 개별 교원의 평가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원장과 원감을 평가한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유아교육정책과)

근거규정에 따라 일반교원과 달리 원장과 원감에 대한 평가주체는 시도교육감이며, 평가관리는 행정권한을 위임받아 교육지원청이 하므로 원장과 원감이 일반교원들의 개별 평가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특수교육

12

2020학년도 공립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질의

2020학년도 공립 특수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에 따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요청합니다.

회신

2019-07-03(특수교육정책과)

시·도교육청이 사전 예고한 특수교사 선발 인원수는 시·도교육청별로 특수학교(급) 신·증설 계획 및 명·퇴직 등에 따른 소요 정원을 추산하여, 선발 인원을 개략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2018년 역대 최대 규모인 1,173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한데 이어, 2019년에는 1,03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년도 특수교사 증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는 10월경 확정된 증원 인원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선정 인원을 최종 공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수교사 정원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 교사의 임용 금지’가 기간제 교사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9-01-16(특수교육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2항에서는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정규교원이 휴직,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 의거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등 잇따른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고, 장애학생 학부모, 장애인 단체, 특수교육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18.12.18.)이 수립·발표 되었으며, 이 중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 교사의 국·공·사립 특수학교 임용 금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사립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기간제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의 경우도 임용이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의 근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과 배치 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9-10-14(특수교육정책과)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법 제47의3*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써, 장애학생의 학교활동을 지원(보조)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복무분야(교육문화업무):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지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문화재 관리 지원 등

**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보조원(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특수교육보조원(실무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이유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관계법령에서 보조인력의 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보조인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부와 병무청은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18.12.18.)'을 수립하여, 교대·사범대 및 특수교육 관련학과 출신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급)에 우선 배치하는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3개월 이내) 실시하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에는 249명의 특수교육보조원(실무원)을 증원하여 장애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관련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를 학교 행정실에서 담당,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신

2019-07-10(특수교육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단위 학교의 세부적인 업무 분장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는 학생을 교육하고 행정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되, 교장이 교무를 통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사무에 관한 업무 분장은 교장의 권한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하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위 편의시설은 학교의 시설 업무를 담당·관리해야 하는 사람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로 판단됩니다. 교육부는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 담당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시·도 담당관 협의회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II 초·중등교육



교육과정

1 학생진로진학과 연계한 과목 선택 가이드북 교과 누락

질의

학생 진로 진학과 연계한 교과목을 설명하는 가이드북에 한문 교과가 빠져 있으니 수정해서 다시 학교로 전달해주세요.

회신

2019-05-17(교육과정정책과)

'학생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과목선택 가이드 북'은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개발된 교원용 안내자료로 '진로 진학과 연계한 고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를 기초로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2017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원용 브로셔 형태로 개발되면서 분량에 제한점이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모든 과목을 수록하지 못했으며, 한문을 비롯하여 가이드북에 수록되지 않은 과목을 보강하여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목 안내서('18.5.)'를 보급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2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 건의

질의

학교마다 자유학년제 운영 역량차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경기 꿈의 학교처럼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체험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신

2019-06-12(교육과정정책과)

학생이 인근 학교를 찾아 다양한 자유학기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는 시도교육청의 지역특화과제로 인근 학교가 자율적으로 클러스터(2~3개 학교)를 구성·협업하고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종) 지역클러스터 활용 공동교육과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연계 진로전공탐구반, (강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 등

다만, 경기 꿈의 학교와 달리, 자유학기는 정규교육과정으로 학교 내에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간·학교 간 운영격차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및 수업참고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학교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자유학기제의 교실수업 개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3월~6월) 및,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8월초) 개최를 통해 자유학기 수업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체육과 평가기준 온라인 열람 허용 요청

질의

중학교 수행평가 자료에 대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회신 2019-07-25(교육과정정책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평가기준은 2016년 개발되어 전국 초·중학교에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교육정보통합지원포털 및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온라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 교육정보통합지원포털(www.edunet.net) → 2015 개정 교육과정 → 평가기준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 → 교육과정 자료실 → 평가기준

4 검인정교과용도서 채택현황 문의

질의

모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과서들을 알 수 있을까요? 검색을 해봐도 통계 자료가 없어서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도 문의를 넣었으나 따로 내용이 없다고 하셔서 여기로 문의를 해봅니다.

회신 2019-08-23(교과서정책과)

요청하신 각 과목별 교과서 채택 현황자료는 우리부에서 생산 및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 취합 및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가 타 학교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집에서 아이와 함께 태블릿이나 PC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 싶어 인터넷을 찾아보고, 교육부에도 문의해 봤으나 교과서는 저작권 문제로 pdf와 같은 전자문서를 배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도 검토하는 현실에 교과서를 종이로만 배포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는 현실 속에서 대안의 하나로 제한적으로라도 학습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배포가 가능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9-02-11(교과서정책과)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에 서책형 교과서를 보급하면서 일부 과목(사회/과학/영어)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도 함께 보급하고 있으나, 서책형 교과서의 원문 파일 전송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시, 논문, 수필, 삽화, 그림, 사진 음악 등의 작품에는 저작권이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자에게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과서 내용을 파일 형태로 자유로운 전송·배포를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에듀넷 티-클리어 홈페이지)하고 있는 바, 그 노력이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 초등학교 전학생의 생활기록부 정정

질의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학생이 2018년 9월 20일자로 A학교에서 B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A학교에서 B학교로 송부한 생활기록부를 B학교에서 검토하던 중 2017학년도 창의적체험활동 중 한 영역의 이수시간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학교에서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후 B학교로 송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B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접수 후 A학교에 누락된 항목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그 자료를 근거로 생활기록부를 정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신

2019-12-03(교수학습평가과)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내용에 대한 정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43호) 제19조(자료의 정정) 2항에 따라,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의 담임교사가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의 정정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학적을 두고 있는 학교(전입교)에서 입력 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담임교사가 정정할 수 있습니다.

7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 및 발명특허 기재



질의

교외 수상경력도 학생부에 기재가 가능한가요? 혹시 발명특허는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인지요?



회신

2019-11-01(교육과정 정책관 교수학습평가과)

2011년도부터 '수상경력'란에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게 되어 있으며, 2012년도부터는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에는 학생의 발명 특허를 기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교외 수상경력, 발명 특허의 학생부 기재는 가능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8

평가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질의

학교에서 치러진 시험의 평가 문항에 대해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9-10-30(교수학습평가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르면, 교수학습의 평가 운영시 발생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이의신청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문항의 오류에 대한 판단과 처리는 해당 학교의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따릅니다. 아울러, 교육부훈령 및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에서는 평가문항의 이의 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초·중학교 수업에서 교사의 설명 등을 학생이 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8-12-31(교수학습평가과)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에 따르면 학교는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교육활동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위 두 가지 법에 근거하여 수업 녹음은, 학습자의 능력을 발휘시키는 교육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교원의 교실수업 방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수업 녹음은 해당 교원과 협의하여 실시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질의

광고 등 미디어에 대해 비판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회신

2019-05-27(민주시민교육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중학교 국어과 교육내용(듣기·말하기 영역/설득전략 관련)에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 경제활동은 초중등 사회과 교육내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은 소비자 교육 및 비판적 이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SNS 등 최신 미디어에 대한 교육 내용을 체계적·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학교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는 귀하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미디어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초등생존수영 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신

2019-06-11(민주시민교육과)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 수영교육은 실기 중심의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조치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이는 생존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체득하여 적극적으로 위험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존수영교육은 수상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므로 초등수영교육의 연차적 확대를 정부의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매년 교육 참여 대상 학년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며, '19년도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의 99%가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 학년에 걸쳐 꾸준하고 반복적으로 수영교육을 받아 생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한국교원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이수하면 중고등학교 상담교사로 활동 가능합니까?

회신 2019-11-06(진로교육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38조(목적), 제41조(목적), 제45조(목적)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중등교육’ 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중등학교 진로상담 관련 교원의 표시과목은 ‘진로진학상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로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중등학교(특수학교의 중등학교 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 포함)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 포함)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진로진학상담’ 표시과목 부전공 교육과정을 38학점 이상 이수한 자이거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진로진학상담’ 표시과목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자에 한해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교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중등학교 ‘진로진학상담’ 교원자격 취득 및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민원인께서 희망하시는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회신

2019-05-24(진로교육정책과)

초·중·고교 및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진로심리검사’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직업적성·흥미·관심 직업을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학과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고교는 학생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세계와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진로수업’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진로상담’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직업현장 및 상급학교를 방문해 직업실무 및 학과를 체험하거나 직업인을 만날 수 있도록 ‘진로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진로교육법’을 제정(15년)하여 진로교육 활성화와 실질적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진로체험망 ‘꿈길’** 등 온라인 인프라와 ‘진로교육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국가·공공·민간이 함께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범사회적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커리어넷) www.career.go.kr, ** (꿈길) www.ggoomgil.go.kr

학생들은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에서 온라인 진로상담과 다양한 직업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망 ‘꿈길’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미래 직업 가이드 북’을 제작해 보급하고, 학부모의 자녀 진로지도 역량강화를 위해 진로소식지 ‘드림레터’를 배포하여 가정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민원

14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2015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

질의

현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언제부터 사용합니까?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과정정책과)

2018. 7. 27 일부개정(교육부고시 제2018-162호)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사회과 교육과정 중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은 2020년 3월 1일(신입생)부터 적용합니다.

15 학교 휴업일에 학교 행사 가능 여부

질의

학교 휴업일에 학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만약 학교 휴업일에 학교 행사를 했다면 수업 일수에 포함되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19.9.24.)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학교의 장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하여야 합니다.

질의

평일에 학교 자체적으로 휴업(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완료)을 실시 할 경우는 그냥 휴업일인가요?
재량휴업일인가요?

휴업일,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방학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재량휴업일의 지정 절차와 특정 학년만 휴업할 경우도 재량휴업일에 해당 하는지 여부도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에 따르면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 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합니다. 즉 학기는 수업일과 휴업일로 나누어지므로, 수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휴업일로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에 따르면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휴업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재량휴업일, 단기방학, 방학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모두 휴업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업일은 학교장이 휴업일의 명칭(사유)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기타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학년의 휴업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의

언론을 통해 수능 이후 수험생 운전면허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원 절차가 궁금합니다.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해 주는지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운전면허(안전) 교육 프로그램은 교통안전교육과 운전관련 학과 시험으로 나뉩니다. 2019년 8월 발표된 <수능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에 따라 교통안전교육(1시간 이수필수)은 운전면허시험장과 학교의 협의·신청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되고, 운전관련 학과 시험은 면허 취득 비용이 발생되면 수익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운전면허 학원 등록 시 이수해야하는 3시간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운전면허(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면허시험장 방문교육) 교통안전교육(1시간 이수필수)으로 인정 → 곧바로 학과시험 응시 가능
 - ※ 5개 운전면허시험장(서울 도봉·서부, 경기 의정부·안산·용인)
- (학교 방문교육) 면허시험장에서 관할 고등학교 방문하여 교육진행
 - ※ 4개 운전면허시험장(서울 강남·강서, 강원 원주, 경북 문경)

18 독서활동상황에 논문 기재 가능 여부

질의

독서활동상황에 논문을 기재할 수 있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논문은 독서활동상황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독서활동상황에 기재할 수 있는 도서는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합니다.

19 외국인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 나이스 연계 문의

질의

외국인 학생입니다. 나눔포털에서 봉사활동한 실적은 나이스 연계, 실적전송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교육정보화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2019년 2학기부터 외국인 학생에 대한 봉사활동 실적을 나이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교정보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나이스와 나눔포털 간 서로 일치하여야 실적 전송이 가능합니다.



질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신규등록된 자격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지 학교로 문의하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술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 목록에 있는 자격증만 기재가능하다 합니다. 기재가능한 자격증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수학습평가과)

교육부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별 소관부처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희망하는 자격증을 교육부로 회신한 자료를 근거로 선정됩니다. (별도 선정기준 유무 확인) 자격증현황에 추가로 등록을 원한다면, 해당 자격증 소관부처에 건의하셔야 합니다.

교육복지

21 해외교육기관의 고졸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질의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1년을 다닌 뒤 중퇴하고 호주로 가서 대학을 나왔는데 TAFE라고 기술대학교에서 certificate4와 diploma 코스를 수료했습니다. 호주에서처럼 한국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으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9-12-04(교육기회보장과)

우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졸업학력은 국내 기관장(국내학교장 또는 대학총장 등)이 국내와 해외 정규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토대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때 교육기간은 국내 학제인 12학년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홈스쿨링, 미인가시설 등에서의 학습경험은 정상적인 교육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수학하신 TAFE과정이 호주의 정규교육과정이라면, 국내에서의 교육기간과 합산하여 12년(24학기)이 충족될 시 학력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졸업학력인정 여부는 상급학교 기관장이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확한 확인은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 귀국학생의 학력인정에 관한 질의

질의

현재 자녀와 함께 해외에 거주중입니다. 귀국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해야 하는데 학력인정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국내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신

2019-10-14(교육기회보장과)

귀국학생이 상급학교(대학) 진학 및 초중고 재취학·편입학 시 학력인정여부는 학교장 또는 상급학교 기관장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동반하여 정당한 사유로 해외출국한 경우라면, 해외에서 정규학교(미인가 불법시설, 홈스쿨링 등 제외)에서 수학하였다는 전제하에 대체로 학력인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학력인정여부는 서류내용을 토대로 학교장이 판단하게 되므로 귀국 후 취학할 예정인 학교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국학생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② 성적증명서, ③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⑥ 예방접종증명서, ⑦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

23 학력인정학교 목록 추가 요청

질의

해외(미국)주재원으로 자녀를 동반하여 약 2년 정도 거주를 하였고, 자녀가 미국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국내 학교에 제출할 학력인정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교육부 외국 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에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회신

2019-08-28(교육기획보장과)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학적서류 간소화학교) 목록 수정은 외교부 현지 공관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지공관에서 해당학교의 정규학교여부를 확인한 후 목록추가를 공문서로 요청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교부 관할 공관 측에 목록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4 고교무상교육

질의

2019년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건가요?

회신

2019-08-05(교육복지정책과)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당초 발표된 계획에 따라 '19년 2학기 고 3학년부터 정상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률도 개정('19.10.31.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20년 고 2·3학년, '21년 전체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됩니다.

질의

민간기업에서의 고교 학비 지원이 유지되게 해주세요.

회신 2019-06-10(교육복지정책과)

우리 부에서는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19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학교가 아니며, 이는 사립 초등학교와 사립 특성화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경우 법적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제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민간 기업의 고교 학비 지원은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6 초등돌봄교실 신청시 구비서류

질의

일시적 실직, 구직 등으로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초등돌봄교실 신청시 구비 서류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9-01-10(방과후돌봄정책과)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재정 상황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신청시 일시적 실직, 구직 등으로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생, 학부모 면담 등을 통해 담임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17개 시도교육청 공동개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7 야간 자율학습 시간 단축 및 희망에 의한 보충수업 실시 건의

질의

고교야자 시행실태와 학생들의 수면실태를 다룬 기사를 보았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시간 단축 및 희망에 의한 보충수업 실시에 대해 문의합니다.

회신

2019-03-11(방과후돌봄정책과)

야간자율학습 및 방과후학교 실시 여부, 운영 시간 등은 학교 자율로 학교장이 학교의 특성 및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이후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원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야간자율학습이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민원

28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 방법 문의

질의

국내 발급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부와 외교부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용방법을 알고자 합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아포스티유 사이트(<http://www.apostille.go.kr>)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아포스티유 사이트 - 자주하는 질문 또는 나이스대국민서비스 공지사항의 아포스티유 온라인서비스 이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

- 아포스티유는 문서 발급국가의 해당문서가 타국에서 사용될 때 공문서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일종의 공증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대한민국 소재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도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 아포스티유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 부처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문서의 발급기록 및 발급정보를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아포스티유 대상 증명서(총10종)**
 - (국문·영문)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 **이용방법**
 - 1단계 : 교육제증명 발급
 - 2단계 :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서 온라인 발급
 - 3단계 : 문서접수기관에 아포스티유 인증서와 졸업증명서 등 교육제증명 제출

29 해외 학교의 학력 인정 여부 확인

질의

주재원 발령으로 내년에 해외로 출국예정입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외국학력인정 학교를 확인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목록에 학교가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현지 학교가 정규 학교인지, 학력인정학교인지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교육부 홈페이지의 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 목록은 외국학교의 학력인정여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귀국 후 한국학교 재취학에 필요한 학적서류(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영사공증을 면제해주는 학적서류 간소화학교의 목록입니다. 현지 학교의 정규학교여부 등은 현지 공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0 당해연도 졸업자의 1회 검정고시 응시가능여부

질의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고졸검정고시를 응시하고자 하는데, 1월 졸업식 후 4월에 실시하는 1회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나요?
(4월 검정고시는 2월초 공고, 2월 중순 접수)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기회보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4조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졸업식 행사와 무관하게 법령상으로는 2월말까지 중학생 신분으로 해석되므로 응시 불가합니다.

31 2020년도 검정고시 출제범위

질의

2020년도 검정고시 출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기획보장과)

2013년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4년 이후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출제기준과 범위인 국가 교육과정(교과서)은 수험생의 다양한 학습이력을 감안하여 전 학년 적용된 이후에 출제범위로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한바, 2020년 초졸 검정고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졸, 고졸 검정고시의 출제범위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열린마당 - 묻고답하기- 초졸.중졸.고졸검정고시 등록된 자료명(2019-0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교육비 지원과 교육급여 중복 수급

질의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교육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근거규정)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동일항목은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33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 문의

질의

2019학년도 2학기 고3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녀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복지정책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시도교육청별 각 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등에서 규정)는 제외됩니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무상교육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으로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학생지원

34 신원 미상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폭법 처분 여부

질의

신원을 알 수 없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형사절차로 회부된 경우에 학교폭력예방법상으로 가해자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2019-02-19(학교생활문화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항에 의하면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학교는 수사권한이 없으므로 익명의 학생을 찾아낼 수는 없으나, 이미 경찰에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 정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개최를 희망하지 않으나 적절히 훈계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경우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신고에 해당하나요?

회신

2019-03-21(학교생활문화과)

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를 필요적으로 소집하게 되어있습니다. 각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① 학교폭력이 아니었거나(허위, 오인신고, 보고), ② 학교폭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명백히 부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는 개최해야 합니다(이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가이드북 38p하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형법에서는 침해된 법익의 경중, 처벌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범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의 여부를 달리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이를 현재까지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고, ② 학교폭력 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처벌을 원치 않을 수 있으나 이것이 곧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개최 희망 의사가 비록자치위원회 개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 할 경우라도 제4호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것이 실제 학교폭력에 해당하였다면 자치위원회는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경우 극단적인 예로서, 4주이상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도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개최를 희망하지 않으나 적절히 훈계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경우에도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위 ②에서 언급한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반하게 됩니다.).

질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의 교육 인가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나요?

회신 2019-04-01(학생건강정책과)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82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규정된 ‘응급구조사’의 직무 관련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금지 분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의 시행 주체는 학교장이므로,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강사가 소지한 자격 등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7 학교 공기정화장치 사용 기준 관련

질의

학교 공기정화기 가동 기준을 완화시켜 주세요.

회신

2019-06-19(학생건강정책과)

우리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으로 '19년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경우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취지이며, 보통 이하의 경우 가동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기정화장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공기정화장치가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민원

38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다국어 지원

질의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는 한국어 외에 몇 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회신

2019년 전화문의(학생건강정책과)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는 현재 한국어 외 5개 언어로(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제공이 가능하며 외국어 검사지는 온라인 검사가 아닌 매뉴얼에서 출력해서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5개 언어 외에도 다국어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언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제도

39 학교 선택의 권리 보장 및 혁신학교 관리

질의

집 가까운 배정보다는 일반학교와 혁신학교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전학과 같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학부모가 교육청에 혁신학교에 대한 문의를 했을 경우 혁신학교의 리스트만 정보로 주기보다는 혁신학교로서의 성과나 그 학교만의 뚜렷한 혁신의 방향성과 목표를 정보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신

2019-06-25(학교혁신정책과)

혁신학교의 지정과 관리는 각 시·도교육청의 「혁신학교 기본 운영 계획」 및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근거하며, 혁신학교의 지정·지원·관리의 주체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혁신학교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현재 전국혁신학교는 총 1,714교이며, 매년 혁신학교 지정 여부(신규 지정, 재지정, 종료 등)가 달라져 혁신학교별 철학과 성과 등의 정보를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혁신학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도교육청이나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에 의거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 지정된 통학구(시·도교육지원청 조례에 의함)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통학구에 소재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승낙을 얻으면 가능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할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질의

여성가족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 '비인가 대안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5. 각종학교' 로 볼 수 있을까요?

회신

2019-05-21(학교혁신정책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5호의 각종학교는 법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아래 사항을 모두 갖춘 학교로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제1항(설립기준), 제2항(설립인가), 같은 법 제60조 3항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절 제83조~88조(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수업일수, 교육과정, 학생정원, 입학자격 등)

질의

폐교를 교육용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아닌 개인도 수의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회신

2019-05-01(지방교육재정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 제5조제1항은 시도교육감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용시설로 폐교재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누구든 수의계약의 대상자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폐교의 대부 또는 매각의 수의계약은 지역폐교의 관리계획, 활용계획 수립권자인 시·도교육감의 재량사항으로 해당 폐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를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동주택 입주계획은 더 이상 없지만 현재 유일하게 있는 중학교가 과밀이고(1학년 급당평균 33.2명, 전교생 평균 30.9명) 향후 10년간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학교 신설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9-04-07(지방교육재정과)

학교의 설립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로서 교육감이 학교 설립에 관한 제반 여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여 학교의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때 총사업비 규모가 40억 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자체투자심사를 거치고 총사업비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 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학교의 총량과 관계없이 사업지역의 공동주택 입주현황(분양공고 기준), 인근학교 현황(거리, 학생수용여력), 향후 학생 수 추이,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향후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가 의뢰되는 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 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의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설립 및 이전,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에 따라 해당 시도의 학교 신설(증축) 관련 계획 및 설립(증축) 일정(개교시기), 그에 따른 공사 진행 상황, 신설과 증축에 따른 학생배치 업무, 통폐합 관련 계획 및 일정, 학생통학구역(학군 지정 및 학생배정)에 관한 사항, 통학로의 개선과 이와 관련한 지자체 및 시행사와 교육청과의 협의 내용 및 여부 등에 대한 문의는 교육부 차원에서 지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기존가구 수보다 가구 수가 증가하지만 증가된 가구 수가 100가구 미만일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2019-05-29(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는 시·도지사가 개발사업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개발사업"의 정의를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증가된 가구 수와 관계없이 해당 개발 사업이 100가구 이상인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동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르면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해당 도시개발 및 정비 사업 시행 결과 사업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구역 내 증가된 가구수가 100가구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가 부담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4 학교용지법 상 학교용지에 유치원 부지 포함 여부

질의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학교 용지"란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 시설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에서 유치원 부지는 그 밖의 학교 시설에 포함되니까?

회신

2019-05-27(지방교육재정과)

「학교용지법」 제2조제1호에서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 밖의 학교시설"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구성하는 부대시설의 일부를 말하며, 유치원은 「학교용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5 학교발전기금 접수의 교육청 일원화 건의

질의

일부 학교의 기부금 사용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을 요구합니다. 개별학교 전입금인 발전기금은 학교금고에서 바로 지출되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공립학교 발전기금 수납처를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회신

2019-06-07(지방교육재정과)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54조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별 자율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위학교별로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 및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안하신 학교발전기금 접수처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개별 학교의 학생복지,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발전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교원복무 · 징계

46 교원의 수업일 및 휴업일 복무 처리

질의

토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공식 행사를 열고 교사를 근무토록 하거나, 교사에게 당직 근무를 시켰다면 학교가 해당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대체 휴무일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학교장 재량으로 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회신

2019-10-11(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에 의거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편, 2019.9.24.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제3항에 의거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일은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고,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교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수업일로 정한 경우, 교원은 1일 8시간을 근무할 의무가 부여됨을 안내드립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2항에 의거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대체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행정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해야 하므로 대체휴무를 제한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로 인해 다수의 대체휴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는 학교장 재량휴업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에 의거 소속 교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 업무이고,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규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소속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교원이 평일이나 방학 중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지도강사 등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 정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또 정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2019-06-10(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에 따라 공무원은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는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의하면,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속기관 장의 명령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거 방과후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운영하는 교육활동이므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과후학교 지도에 따른 교사 복무는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지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소속기관 장의 명 또는 사전 승인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침과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식 등에 따라 소속 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 방과후학교처럼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공제한 이후의 시간이 실제 근무시간일 것이며, 그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교원이 주말 및 공휴일 기간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고 다음날(출근일) 새벽에 귀국하여 출근(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주말 및 공휴일 기간에만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회신

2019-07-17(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3장(근무일과 공휴일)에 의거 일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의 해외여행일이 근무일이 아닌 휴일(주말 및 공휴일) 내에서 실시됨에 따라 별도의 복무상신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에 의거 학교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속된 학교의 장과 해외여행 일정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신 후에 해외여행을 실시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질의

현재 연가 2일, 병가 2일을 사용한 교원입니다. 질환으로 병가와 연가를 모두 쓰고 질병휴직을 할 경우, 연가는 19일, 병가는 58일을 쓸 수 있는지요?

회신

2019-07-17(교원정책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3조에 의거 교원의 휴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총칭하며,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가 사유의 지각·조퇴·외출은 누계시간이 8시간이 되었을 경우 1일로 산정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 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 사용한 병가 일수와 연가 일수는 각각 2일이므로, 잔여 병가 일수는 58일, 잔여 연가 일수는 19일입니다. 다만, 연간 통산 병가일수나 휴직기간이 1달 이상인 경우는 그 기간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아 당해연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므로, 병가 60일을 사용하실 경우와 질병휴직 기간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연가사용일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학기 중 연가 사용과 관련하여 2017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 근무 지침을 발표하여 연가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교사는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경우 보결 수업 교사가 확보되지 못하면 휴가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휴가 신청자가 보결 수업 교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회신

2019-10-22(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원의 휴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35호)」를 두고 있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에 의거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해야 하고, 학교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연가)에는 학교장이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관계를 규정함에 따라, 교원은 미사용 연가보상비 지급, 연가 사용의 권장, 연가의 저축,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등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교사의 휴가 등으로 인한 수업 공백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과정이 정한 교과별·학년별 연간기준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므로, 단위학교별 결보강 계획 등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여야 합니다. 단위학교별 결보강 계획 등은 단위학교 교직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수립되어 운영되므로, 귀하께서 소속한 학교에서 정한 결보강 계획 등을 준수하실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에 따라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연가 및 결보강 방안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소속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적용 가능한 규정인가요?

회신 2019-10-31(교원정책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교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동 예규 제5조제1항)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교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연도 중 휴직·퇴직 예정자는 연가 미리 사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일수로 인정되어 연차일수에 반영되므로, 공무원도 저출산 시대에 출산문제 해결을 위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휴직기간이 연가 일수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회신

2019-04-09(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은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재직기간이란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어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가 일수는 귀하의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 자녀에 따라 생성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에 따라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연가 일수 부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속 교육청 인사담당자를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받으시길 바랍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개정 사항(육아휴직 기간을 출근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해 달라는 제안은 근로자 및 공무원의 휴가제도 형평성, 사회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향후 법령 개정 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귀하의 제안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한 달 이상 병가를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병가의 시작이 공휴일인 경우 시작일이 병가 일수에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9-09-18(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8장에 따르면 휴가란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을 총칭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출근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출근의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병가의 시작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여러 질환으로 병가, 병지참 및 병조퇴로 병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한 경우, 각각의 병명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6일을 초과한 이후 발생하는 진단서만 제출해야 하는지요?

회신

2019-05-07(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3항에 의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규정 제17조제5항에 의거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뺍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에 따라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는 연간 누계 6일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유 여부는 승인권자(학교장)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병지참, 병조퇴 등 시간단위 포함)부터 해당 병가의 사유가 되는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승인권자(학교장)의 판단을 받으셔야 하며, 동일한 병가의 경우 승인권자의 판단 하에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하여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질의

난임으로 병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회신

2019-08-28(교원정책과)

병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에 의거 국가공무원이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의 사유로 병가를 승인하는 것은 병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난임의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며, 복무승인권자는 병가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특별휴가 중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남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난임치료시술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질의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출산 후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공무원에도 해당되는지요?

회신

2019-09-25(교원정책과)

2020. 1. 1.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경조사휴가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 보호, 안정적인 학사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교원의 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복무 승인권자인 학교장이 휴가 사유와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의 승인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휴가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도교육청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질의

육아시간을 한 달 중 하루만 사용해도 한 달이 차감되는지요? 만약 차감된다면 한 달의 기준은 1일부터 말일인가요, 아니면 육아시간을 처음 쓴 날짜부터인가요?

회신

2019-06-19(교원정책과)

2018년 7월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의거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4개월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월(月)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은 일(日)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1달의 기준은 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보며, 해당 월에 1일을 사용해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당초 공무원 육아시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됨에 따른 조치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육아시간 사용 후 퇴근 후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학교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

2019-08-22(교원정책과)

2018년 7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시간은 학교 여건, 개인 사정 등에 맞게 일 단위, 주 단위 등으로 나이스 복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시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오전, 오후 등 사용시간을 불문하고 그 날에 한해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 후 불가피하게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육아시간을 연가로 변경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질의

2019년 10월 1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사도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19-08-20(교원정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및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등은 2019년 10월 1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공무원의 복무와 휴복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육공무원법」 등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하여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2018년 7월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에 의거 만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허가권자(학교장)가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할 경우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를 통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편, 교육공무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유사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직원의 임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도교육청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질의

고등학생 자녀의 대수능일에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회신

2019-11-11(교원정책과)

자녀돌봄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제13항에 의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일에 자녀를 동행하기 위하여는 현재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질의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로 기간연장 승인서가 있어야 휴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진단서만 있어도 되는지요? 진단서만 필요하다면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은 1년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진단서에 의한 기간만큼 휴직을 명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2019-11-12(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한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그 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고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7에 의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질병휴직 시 그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 또는 요양에 실제 필요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의 특성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에 요양기간을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의 종류와 정도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후 질병의 경과추이를 고려하여 질병휴직 연장 또는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으셨으므로 별도의 공무상 요양승인을 추가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휴직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임용권자는 귀하가 제출한 기존의 공무상 요양승인, 진단서, 향후 치료계획 등을 토대로하여 진단서의 진단내용 및 기간,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휴직을 결정하므로, 휴직 가능여부 및 기간은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한편, 요양급여는 공무상 요양승인과는 별개이며, 동일 질병이나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 공단에 요양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은 임용권자(교육감) 소관 업무이므로, 공무상 요양승인 및 기타 상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소속교육청 공무원연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질의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유학휴직 중이며, 학위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 시점에 박사학위 입학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유학휴직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9-07-24(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거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이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에 해당합니다. 유학휴직의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이며 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에 의거 임용권자는 유학휴직, 동반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 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부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제5장(휴직과 복직)에 따라 학위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은 당초 학위를 취득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복직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유학휴직을 명받은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휴직사유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속 교육청의 청원휴직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교원이 복직 후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복무, 휴복직 등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질의

캐나다 공립학교에 교원으로 고용된다면 고용휴직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19-10-02(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의거 교육공무원이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고용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기관’이라 함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 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기관 등도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용기관의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허가함에 있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휴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휴직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소속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휴직과 관련하여서는 소속 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현재 12개월 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며 곧 복직할 예정입니다. 신학기에 동일 자녀의 양육을 위해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2019-09-05(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의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법정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빠의 달 수당’ 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제2호에 의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귀하께서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제5장(휴직과 복직)에 의거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휴직에 따른 기간제교원 임용도 학기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중에 자녀 동반 없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9-03-28(교원정책과)

교원의 육아휴직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거나, 해외체류 가능 기간 등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에 따라 교원의 복무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소관 업무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해외 여행이 휴직 목적에 위배되는 지 여부는 귀하의 해외방문 기간, 목적, 동반자, 체류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임용권자(교육감)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질의

육아휴직 중에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데, 휴직 중 대학원 수학이 본연의 휴직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불가능한지요? 이 경우 대학원 학위 취득 시 승진평정에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반휴직 도중에 국내에서 대학원에 수학하여 학위 취득 시 학위 인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9-08-06(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르면 휴직자가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 중 복무와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사관리규정」 제26조 제1항에는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휴직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은 법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사유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육아휴직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학원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반휴직의 경우 배우자의 국외 근무를 사유로 하므로, 국내 대학원 수강은 휴직 사유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의 인정기준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가 정하며, 동 규정 제42조에는 명부 작성권자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바, 귀하의 학위취득 실적평정권자는 교육감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학위취득실적평정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세부 기준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정할 사항이므로, 학위 취득 당시의 복무 관련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확인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 대학 강의로 인한 교사의 휴직 가능 여부

질의

중등교사로 대학 시간강사 출강을 위해 고용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연수휴직(자율연수휴직 포함) 중 대학의 시간강사로 겸직하여 출강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

2019-01-04(교원정책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라 강의, 연구, 학술활동 등을 목적으로 고용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대학에서 강의, 연구 등의 활동이 아닌 행정 지원업무의 목적으로는 휴직할 수 없으며,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서 정한 겸직허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동 규정에서 휴직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라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9장에서 정한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여 허가권자(학교장)의 승인을 얻는다면 겸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겸직허가권자(학교장)는 해당 공무원의 휴직 목적 적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이 하려는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교육공무원법의 가사(간병)휴직과 관련하여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있으나, 해외출국, 생계를 위한 직장생활 등의 어려움으로 장기간의 간병이 어려워 손자가 조부모를 간호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회신

2019-07-15(교원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9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른 가사휴직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사용하는 휴직으로서, 휴직자의 신청 및 임용권자의 허가로 실시되는 청원휴직입니다. 이중, 조부모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은 본인 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사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이 간호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 간호의 필요성, 간호에 필요한 휴직기간 등에 대하여 판단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교원의 휴직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소관 업무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소속교육청 인사담당자에게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교원이 타 기관에 근무하는 고용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직기관에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휴직 중에 본직기관의 소속 부서가 아닌 다른 어떤 부서로 겸임발령을 할 수 있는지요?

회신 2019-10-17(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에서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휴직 중인 교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겸임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내용이 먹는 방송, 여행 방송 및 일상 등 교육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광고를 삽입하여 영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유튜브 활동을 할 때 겸직 승인 심사기준 및 광고 삽입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고 광고수입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가능한지요?

회신

2019-07-29(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하려는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교사 유튜브 활동 증가, 교육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도,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사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하였고, 이를 학교 현장에 안내하여 9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 교육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준수 등 복무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는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도 원칙적으로 비규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을 허가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영상에 수록을 금지하였고,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 시청이 요구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를 금지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유튜버에 대해 확인 결과, “○○”채널의 유튜버의

경우 소속기관에서 검직허가를 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채널의 유튜버는 2019년 4월 교육부 실태조사 당시 검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속 교육청에 안내하여 검직허가 신청 및 심의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시도교육청 소속 교원의 복무 지휘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으므로, 해당 교원의 구체적인 복무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소속 교육청 복무 담당 장학사와 협의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질의

학생들에게 코딩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간단한 게임 개발까지 가르치고 싶은데, 제가 개발한 어플에 광고를 삽입하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인가요?

회신

2019-06-19(교원정책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비영리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겸직허가 대상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소속기관장입니다. 이때, 계속성의 판단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주기는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또한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광고 삽입 시 겸직허가 여부는, 겸직하려고 하는 직무의 상세 자료(겸직 내용, 겸직기간, 수익발생 내역 등)을 소속기관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는 영리 업무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삽입된 광고의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겸직 허가를 불허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질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소속청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신고하였으나 교원은 접수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대상이 아닌가요?

회신

2019-09-02(교원정책과)

2019.7.16.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 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6조의3에 의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며,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동료교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원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부에서는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근절을 위해 전담직원 지정,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갑질 발생 시 신고, 조사, 조치, 피해자 보호대책,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갑질 행위 대응 방안과 갑질 예방을 위한 년 1회 이상 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 가해자 대상 징계조치 외의 재발방지 교육 실시, 갑질 예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의 갑질 예방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에 의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수준에 따라 파면부터 감봉까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을 때는 파면-해임부터 감봉-견책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는 직장(학교) 내에서 겪으신 교육활동 침해사안이나 갑질 행위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안내를 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갑질신고는 온라인은 교육부 홈페이지-국민참여·민원-신고·제안·고충처리-갑질신고센터로, 우편은 교육부로 직접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법」 제27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징계 관련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으로 추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기간제교원 경력증명서 발급 간소화

질의

기본적인 개인 신상과 관련된 주민등록증이나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중요 서류들도 모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왜 기간제교사 경력증명서는 안 될까요?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2019-08-21(교원정책과)

기간제교원의 경력증명서는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 제1항 제31호에 따라 동 규칙 제23조를 준용하여 별지 제33호의 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교원의 임용권은 각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또는 사립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임용권자(학교장)가 기간제교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귀하의 의견처럼 경력증명서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차세대 나이스 시스템 적용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기간제교원의 인사기록 및 시스템의 정비, 관련 법령 검토 등 중장기적인 검토 과정이 필요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단위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라 교사가 학교 업무를 맡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3항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의 ‘법령이 정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9-01-08(교원정책과)

「교육기본법」 제14조에 의거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4항에서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 및 연구, 생활지도를 교원의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교육기관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의 행정권한 위임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교과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의 교수·학습자료 및 학교(급) 문고관리, 학생 수학여행 실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의거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의 장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교무와 행정업무 등 학교업무를 직위 또는 직급에 따라 분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교원의 업무는 소속기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으로 결정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전화민원

75 건강검진 재진료의 공가 사용 여부

질의

교원입니다. 건강검진 재진료의 경우에 공가가 가능한지요? 이전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르면 재진료의 경우 공가가 가능했으나 2018. 11. 9. 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원정책과)

2018. 11. 9. 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는 교원의 휴가에 관해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기에 건강검진에 따른 재검진은 공가대상이 아닙니다.

교원자격 · 복지

76 교육실습 면제의 가능 범위

질의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을 때, ‘교육실습’ 면제에 ‘교육봉사활동’과 ‘학교현장실습’이 포함되나요?

회신

2019-03-19(교원양성연수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 고시)의 [별표 2]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따르면 ‘교육실습’의 영역에는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고시 제6조제7항에 따라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의 교육실습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학교현장실습’과 ‘교육봉사활동’ 모두 해당됩니다. 단, 해당 경력에 따른 교육실습 면제에 관한 인정 여부는 소속 대학의 장이 판단하여 적용됩니다.

77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 방법

질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이 통폐합되어 대학에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재교부 신청과 발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9-09-27(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쇄된 사립대학의 경우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까운 시·도교육청이나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문의하시어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8 기본이수과목 중복인정 여부

질의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중 교과교육영역(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했을 때 기본이수 영역으로 인정이 되나요? 교과교육영역을 제외하고 21학점을 수강해야 하나요?

회신

2019-04-08(교원양성연수과)

전공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3조제6항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에 속하는 교과교육영역(교육론)을 교과교육영역으로 이수하는 경우 기본이수과목과 교과교육영역에서 모두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중복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전공학점 50학점에서는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습니다.

79 실기교사자격 발급 방법

질의

실기교사 자격증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신 2019-05-07(교원양성연수과)

실기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실기교사 자격 기준 제1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한 대학·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실기교사 관련학과 졸업자이거나 제2호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대학의 학과의 졸업자로서 교원양성과정 중에 실기교사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을 충족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제5호 자격은 '19.6.19.부터 시행됩니다.

80 교육봉사활동인정 가능 기관

질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봉사 확인서를 근거로 교육봉사활동 인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9-04-03(교원양성연수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6조제9항에 따라 교원양성기관, 즉 대학은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이 아니므로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발급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대학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며 2014년 관련 법규 개정(교육부고시 제2014-48호, 2014. 9. 2., 전부개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는 교육봉사 활동 가능 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81 교원능력개발평가 익명성 보장 여부

질의

학부모본인확인번호 입력 후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참여시, 익명성이 보장되나요?

회신

2019-11-07(교원양성연수과)

학부모 본인확인번호는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성명, 생년월일) 삭제로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조사 참여시 학부모 본인확인 여부만 파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참여자 개개인이 한 체크리스트 응답결과는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처리되므로 학교는 물론 교육청 담당자도 알 수 없는 등 철저한 익명성 및 보안유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2 사학 연금 대상자 및 수령 시기

질의

국공립교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인가요? 그리고 사학연금은 만으로 몇 살부터 수령 가능한가요?

회신

2019-01-25(교육협력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에 적용되는 연금이므로 국공립교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더불어 사학연금은 원칙적으로 만 65세가 될 경우 수령가능합니다.

질의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2차 의료기관) 직원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적용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9-02-21(교육협력과)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에게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체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 준칙상 법인회계가 아닌 수익사업체회계로 운영되고 그 임용·복무 등에 대하여 학교법인 사무직원과 구별되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연금법 적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되었다 하여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에게 해당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84 사학연금 미불입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질의

사학연금 최대가입기간(만65세)을 초과하여 사학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9-04-09(교육협력과)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향후 퇴직 시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으며, 이는 민간 기업에서의 국민연금(노령연금) 및 퇴직금과 유사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 가입자와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민간 기업에서와 같은 퇴직금은 통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학연금 적용대상 기관에서 퇴직하지 않아 사학연금 가입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한, 부담금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가입자에 해당되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학교기관에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러한 권한은 없으므로, 귀하의 학교기관에서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근로자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공의 직무에 해당한다면, 교원과 공무원의 공적 직무 연관성이 있나요?

회신

2019-04-24(교육협력과)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 업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일반근로자와는 다른 특별한 근로관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2013헌마343, 2015. 5. 28.). 따라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는 그 지위 및 직무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차이가 있는 바, 일반근로자는 법령 및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의 적용을 받는데 비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자체별 복무 조례에 적용을 받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국가공무원인 학부모위원의 경우 특별 휴가 중 자녀돌봄휴가나 연가를 통해, 지역위원의 경우 연가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휴가 적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 속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립대학교에서 정규직전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면 사학연금을 가입되어야 하는데 저는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아서 사학연금을 가입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을 때보다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신분변동 시 사학연금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지요?

회신 2019-05-24(교육협력과)

사학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유치원과 같은 일부 임의가입 기관을 제외하고는 가입의 방식이 강제되는 것이 기본이며, 이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제도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될 경우 사학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학교경영기관의 자율적 경영으로 소속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학교경영기관에서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의 자율적 계약에 의한 고용형태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법상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이상의 신분 상태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정규직이 되시면, 사학연금에 당연히 가입하시게 됩니다. 공적연금 제도 간 이동으로 연금수급이 곤란한 대상자의 가입기간 연계를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 및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은 현재 가입해 있으신 국민연금(1355)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시는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사학연금 가입이 강제되시며, 개인과 기관이 임의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개인이 사립대학교에서의 취업 종료 이후 연금의 일괄지급 또는 5년 동안 월별 연금지급 중 한 가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KTPF 계정에 들어있는 개인 자금 전액이 몰수되나요?

회신 2019-07-10(교육협력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사립학교에서 재직 후 퇴직하는 교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급여는 교직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일시금급여 또는 연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4조(시효)에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퇴직급여의 경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시효로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장기간 불확정 상태로 두는 것이 불합리하고, 기간이 지나면 그 증거가 곤란하게 되기 때문이며, 퇴직급여 청구권뿐만 아니라 부담금·환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1.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칙 제·개정은 왜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문할 수 있나요?
2. 일반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선발할 때 왜 학부모 위원을 먼저 선출하고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이나 교원 위원이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나요?

회신

2019-10-22(교육협력과)

- (1)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제2항의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당시 국회본회의 회의록(제206회-4차) 확인 결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사립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문기구로 변경하면서 해당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 위원 구성 비율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1995)’를 살펴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학교규모와 운영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의 범위를 제안하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거쳐 학부모, 교원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가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시기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별 선출 시기는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지역 위원을 선출하는 선출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바, 구체적인 위원 선출시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조례 등의 위임)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마다 차이는 있으나 학부모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5~10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부모 위원을 지역위원보다 먼저 선출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지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 등 전문가, 교육행정공무원,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동 연구를 보면, 지역사회 인사를 추천이나 지명의 방식으로 선출하는 미국, 영국 등 외국의 단위학교 의사결정기구 사례를 참고하여 동문대표, 소속 교육행정기관 인사 및 교육전문가, 기업인 등 학교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사가 추천을 통해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민원

89 표시과목 변동에 대한 적용년

질의

2016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8학년도 또는 그 이후에 복수전공을 이수 시 분리 전 표시과목을 적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된 표시과목을 적용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16학년도 입학자(공업디자인학과: 디자인·공예)가 2018학년도 이후에 복수전공(화학공학과)을 이수한다면 이 학생의 복수전공의 표시과목은 분리된 표시과목인<화공>인가요? 아니면 분리 전 표시과목인 <화공·섬유>인가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원양성연수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의 개정(16.12.8.)에 의해 아래 표의 표시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7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적용되며 '16년 입학생까지는 분리 전 표시과목으로 적용됩니다.

분리 전 표시과목	분리된 표시과목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전기·전자·통신	전기, 전자, 통신
기계·금속	기계, 재료
화공·섬유	화공, 섬유
항해·기관	항해, 기관

재학생이 복수전공을 할 경우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입학년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년도에 사범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18년도에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된 경우에도 '16년도의 자격기준으로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적용되며, '16년도 입학자가 '17년도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고 '18년도에 복수전공을 할 경우에는 분리 전 표시과목(화공·섬유)이 적용됩니다.

III 교육안전정보



학생안전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자율등교 조치 요청

질의

오늘 같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는 휴교를 하거나 자율등교하게 해주세요.

회신

2019-03-20(학교안전총괄과)

교육부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실내체육시설 확충 지원,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등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지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동 매뉴얼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시, 질병결석을 허용하고, 질병결석 절차를 간소화*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학기초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를 사전제출하면 등교 전 교사에게 사전연락(전화 등)하여 질병결석 인정 가능

※ 유치원은 별도 서류 없이 등교 전 교사에게 사전연락(전화 등)하여 질병결석 인정 가능

다만,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결석'으로 처리하며, 질병으로 인한 결석 시 반드시 '질병결석'으로 처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병사유에 따라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휴업은 학교장의 결정 사항이며, 교육부는 휴업의 참고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매뉴얼을 보급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휴업 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필요시 초등학교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 홈페이지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교안전사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이 통계의 집계 대상에 대학생이 포함되니까?
- 질문2) 2009년~2016년 통계의 대상이 되는 학생 수가 궁금합니다.
- 질문3) 2017년 통계는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질문4) 학교안전사고 통계에는 반영되어있지만 공제급여 보상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회신

2019-03-26(학교안전총괄과)

- (1) 대학생은 학교안전사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통계의 대상이 되는 학생 수는 해당 통계를 관리하는 '교육통계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kess.kedi.re.kr>).
- (3) 2017년 통계는 현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4) 「학교안전법」 제15조에 의해 교육감은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동법 제18조에 의해 공제급여 지급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는 반영되지만 공제급여가 보상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 접수 후, 1) 피공제자가 공제급여를 미청구한 경우 또는 2) 「학교안전법」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제46조(부당이득의 환수)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교육정보

3 정원의 관리 증명서(초, 중) 민원발급

질의

교육제증명(정원외관리증명서)발급 창구를 확대해주세요.

회신

2019-07-02(교육정보화과)

나이스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 발급종수 확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외관리증명서는 방문발급 이외에도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관공서(주민센터, 구청, 병원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까운 설치장소는 정부24(www.gov.kr) - 무인민원발급안내 -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안내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국 초등학교 수 문의

질의

전국 초등학교 숫자가 몇 개인가요?

회신

2019-08-26(교육통계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학교, 학생 등에 관한 교육통계 현황을 국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을 통해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활용 안내(PC 접속) -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http://kess.kedi.re.kr>) 접속 ⇒ 상단탭 : 교육통계 ⇒ 연도선택 ⇒ 유치중등통계 ⇒ 개황 ⇒ 학교급별 개황

전화민원

5 나이스 홈에듀민원서비스 발급 서류의 인정 여부

질의

대입전형시 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합니다. 나이스 홈에듀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서류도 가능한가요? 인근 학교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하겠다는 학교가 있습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정보화과, 대입정책과)

학교생활기록부는 정부24(2017년 2월 졸업생 이후) 및 나이스 홈에듀민원서비스(2017년 이전)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문서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생활기록부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발급번호 확인(온라인 문서진위확인), 스캐너용 진위프로그램 사용(오프라인 문서진위확인), 모바일 민원서류 검증(모바일 문서진위확인)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시설

6 기숙사 긴급 구조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관련 수의

질의

기숙사 시설 안전과 관련되어 민원이 발생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구조안전진단 및 보수공사 관련 긴급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8-12-12(교육시설과)

귀 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기숙사 긴급 구조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는 학교 자체 「구매 계약 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며, 아울러 공사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 교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학교시설의 석면제거 과정에서 발생된 경량철골(M-bar)에 대한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주세요.



회신

2019-03-22(교육시설과)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은 해체제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등이 준수되지 않아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 및 석면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견주신 경량철골(M-bar) 처리에 대한 내용 또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서,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량철골 등에 분진 또는 석면 잔재물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시도교육청 및 석면제거업체 등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8 학교석면 관리(무석면학교 인증) 질의

질의

교육감의 무석면학교인증 절차와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9-05-01(학생건강정책과)

우리 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가 석면건축자재 철거 또는 학교의 이전 등으로 석면건축 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신청서류(석면지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개보수 현황)등을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고,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와 관련,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무석면 학교 인증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석면지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 개·보수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학교 현장을 확인(전문가 동행 등)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폐업된 PC방 위치에서 새로운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교육환경보호위원의 재심의가 필요한가요?

회신

2019-03-21(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에서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에 나쁜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내(학교경계 등으로 부터 50미터부터 200미터 범위)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금지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영업중인 PC방이 폐업되었고 동 위치에 새로운 PC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당시 심의조건(시설의 규모 및 출입구 위치, 학생들의 통학로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민간분양사업으로 2016년 최초사업승인 접수 후 사업이 지연되다가 2019년에 유관부서 협의가 시작되어 사업승인을 득 하였습니다. 본 사업지는 정비사업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규모의 민간분양사업이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는 법령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까지 반려 및 취소되지 않고, 도서에 변동이 없어 예외사항으로 진행하지 않음) 2020년에 변경사업시행인가 계획 예정인데 교육환경 평가를 진행해야 하나요?

회신

2019-11-26(학생건강정책과)

현행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법 시행(17.2.4.) 이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신청이 취소되었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반려된 경우는 제외)한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해당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다시 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환경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건축허가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화민원

11 석면해체공사 기준 문의

질의

방학기간에 학교에서 석면해체 공사가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로서 교육부에서 정한 석면해체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시설과)

교육부는 학교석면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석면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2018 석면제거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2019년 5월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를 배포하였습니다. 개인이 안내서를 보시려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홈페이지의 '알림서비스 - 정보자료실'에서 [학교시설 석면 해체, 제거 안내서]를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IV **고등교육**



대학 학사·제도

1 학점포기제 부활 건의

질의

학사운영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부분적 학점포기제 부활을 건의합니다.

회신 2019-01-30(대학학사제도과)

재수강, 성적의 관리 등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으로, 이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점포기제는 지난 2013년 언론보도, 국정감사 등에서 대학이 성적증명서를 원 성적과 다르게 이중으로 발급하는 관행 등이 지적되어, 그 해 12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학생성적관리 개선방안에 따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금지한 사항임을 안내해드립니다.

2 원격수업 운영규정 관련 문의

질의

계절학기 개설 강좌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안내 상 '연도 학기별'을 어떻게 적용하여 해석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 2019-06-07(대학학사제도과)

대학의 계절학기가 정규학과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개설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정규학과와 동일하게 20% 상한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계절학기가 정규학과가 아닌 정규학기에 대한 보완적 학기로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가 속한(통상 여름 계절학기는 1학기에, 겨울 계절학기는 2학기에) 학기에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대학 내 집단 문화 개선

질의

전국 대학교의 집단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회신 2019-07-15(대학학사제도과)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12조(학생자치활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학칙)에 따라 각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개별 대학의 학생자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새 학기 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협조 요청' 공문(19.2.11.)을 시행하여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을 개별 대학에 발송하였으며, 선·후배간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등 대학 내 건전한 학생 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 내 건전한 학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질의

대학-대학 간 이중학적·이중등록, 대학-대학원 간 이중학적·이중등록, 대학원-대학원 간 이중학적·이중등록 금지되나요?



회신

2019-11-20(대학학사제도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에 따라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현행법령 상 이중학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문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학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재학하고 있는 학교,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교육관계 법령에는 대학(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석,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을 동시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학문 취득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중학적을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학(원)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대학(원)(재학 중인 대학,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신

2019-01-10(대학재정장학과)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소속 대학의 안내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1학기 1차 신청 '18.11.20.~12.17. / 2차 신청 '19.1.29.~3.6.

신청 대상은 신·편입생·재학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을 이용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학 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2차 신청기간에 신청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과 함께 진행되는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 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장학금 신청기준 및 지원내용

질의

국가장학금 신청기준과 지원내용을 알려주세요.

회신

2019-02-20(대학재정장학과)

국가장학금은 소득연계형 지원으로 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부터 67만 5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19년 기준)하고 있습니다.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소득구간 결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고, 소득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하여 이미 1회 적용을 받았더라도 기회를 한번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 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의

4년제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경우, 2년제 대학에 재입학하면 수혜횟수 초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어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회신

2019-11.14.(대학재정장학과)

정부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정부재정 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학생 지원을 위해 소속대학의 학제와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 2년제 4회, 3년제 5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

편입·재입학 등의 경우에는 최대 지원횟수에서 이미 지원받은 수혜횟수를 뺀 잔여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횟수 확대는 정부재정 여건 및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의

개인사정으로 대학을 자퇴하려고 합니다. 등록금 반환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9-08-23(대학재정장학과)

❖ 대학 등록금 반환사유 ❖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할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대학 등록금 반환기준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 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나. 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다. 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대학 등록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질의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9-09-09(대학재정장학과)

등록금 카드 납부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의거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마다 카드사용 여부가 다릅니다. 다만, 국내 377개 대학('19년 대학정보공시 기준)은 학생 편의 측면에서 카드 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학생들이 할부 수수료 부담이 없는 분할납부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의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에게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회신

2019-03-22(국립대학정책과)

직책수행경비는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이며,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 활동비로서 감사·예산 등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 참고). 따라서,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직책수행경비 또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8조의6에 따른 [별표13], [별표15]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관리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질의

이사장도 감사 대상일 경우, 이사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9-01-26(사립대학정책과)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에 감사의 직무 수행을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전제로 감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사장과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사립대학교 학칙에 교수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직접 지원할 수 있나요? 그 학칙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요? 노동조합의 경우 학교에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교수회도 적용되나요? 그 외, 합법적으로 교수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신

2019-04-18(사립대학정책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 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학칙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교수회 운영과 관련 교비회계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질의

학교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의 직원으로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럴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안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교비회계의 보수액 일부를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있나요?

회신

2019-07-05(사립대학정책과)

학교법인 소속 직원의 대학 업무 겸직 가능 여부 사무직원의 임용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서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정관과 내부 지침에 따라 겸임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 안분 지급에 대한 검토 정관과 내부 지침에 비추어 겸임 발령이 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겸직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겸직수당 지급 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겸직수당을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위반이므로, 교비회계에서 법 인회계로 겸직수당 전출은 불가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립학교 직원(대학병원 직원) 선발 시 절차와 관련하여, 정관에 정해진 정원범위 내에서 공개채용에 대한 승인을 이사장에게 받아 공개채용을 시행하고, 선발된 인원을 임용권자인 이사장에게 인사제청을 하여 임용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개최가 없다는 사유가 문제가 되나요?



회신

2019-09-23(사립대학정책과)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규정 및 단체협약 사항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5 법인 이사회 심의사항 여부

질의

사립대학 보수규정에 의한 급여인상, 보직수당 신설/인상/인하 등이 법인 이사회 심의사항인가요?

회신

2019-10-25(사립대학정책과)

현행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는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정관 시행세칙”에서 “학교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의 설치·폐지, 기타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제도의 신설·변경 및 폐지”로 규정되었다고 한 것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에서 정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의 해당여부는 1차적으로 해당 학교법인에서 결정하여야 하지만 보수(급여),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근로계약) 등을 통해 근로의 대가로 교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 “예산을 수반하는 중요제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현재 대부분의 학교법인에서는 “보수(급여), 수당”에 대하여는 정관상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하지 않고, “(보수, 급여,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와 같이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6 사립 전문대학 교원의 집단행위

질의

사립 전문대학 소속 교원이 연봉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호소문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집단행동 금지 조항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9-03-21(전문대학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단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

17 입학 당시와 다른 학과명 졸업 가능 여부

질의

학교에서 학칙개정과 학생동의 절차를 거쳐 입학당시 학과명과 다르게 학과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졸업예정자들이 변경된 학과명으로 졸업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러한 학과명 변경이 교육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요?

회신

2019-01-09(전문대학정책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전공의 설치, 교육과정의 운영 등은 각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학칙을 개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지위

질의

산학협력단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나요?

회신

2019-09-10(산학협력정책과)

산학협력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 특수법인인 동시에 대학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19 대학생 현장실습생 운영 관련 문의

질의

현장실습 중 인정되는 1일의 휴식일이 유급인가요?

회신

2019-01-29(교육일자리총괄과)

현재의 현장실습 운영규정은 근로자와 같은 유급휴일 기준이 아니며 협의에 따라 무급 혹은 유급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장실습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유급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 계약학과 학위취득 관련 문의

질의

계약학과 운영요령과 관련하여 박사과정 수료한 이후 학생이 소속 산업체에서 인사명령에 의해 자회사(계열사)로 이직을 한 경우에 계속해서 논문을 작성한 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나요?

회신

2019-03-04(교육일자리총괄과)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21조(퇴직)제2항은“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라는 학생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제기하신 민원에서 “인사명령에 의해 계열사로 이직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학생들이 실습할 현장실습 업체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산업체 입장에서 학생들은 숙련도가 낮아 업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실제 교육적 의미로 참관하고, 현장 분위기를 익히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체에게 4대보험을 들라는 것은 매우 무리한 시행기준입니다. 4대보험이란 고용보험이며, 현장실습은 분명 근로가 아닌 교육으로, 관련 기준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9-06-17(교육일자리총괄과)

대학생 현장실습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고등교육법상 수업의 한 방식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전공과 관련된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이며, 근로와 교육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실습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고시 제2017-115호),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직업제고 학생들에 적용하던 산재보험 가입 적용대상을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까지 확대하는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고시로 정한 바 있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언급해 주신 4대 보험 중 산재보험 외에는 의무가입이 아니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현장실습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창업 지원 정책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9-09-11(교육일자리총괄과)

교육부는 대학의 창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학(원)생의 기업가 정신 및 창업 마인드를 고취하고, 대학 우수인재의 적극적인 창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등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대학창업펀드 조성 : 교육부와 대학 등이 대학 초기 창업기업(학생, 교원 등)에 사업화자금을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

- 문의처 : (주)한국벤처투자(www.k-vic.co.kr)

나.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대학원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 및 고급 기술기반 창업 지원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다.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 대학 컨설팅, 창업전담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대학의 창업교육 질을 제고하고,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창업인재 발굴하여 체계적 육성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www.changgo.or.kr)

- 아울러, 개별 대학의 여건에 따라 창업 강좌 및 실습 프로젝트 등 교육 프로그램, 창업 동아리 지원, 대학별 창업경진대회 등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으니, 각 대학의 창업교육 및 지원 내용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또는 창업지원단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민원

23 학자금대출 상환 면제기준 관련

질의

학자금대출 상환 면제기준 신설에 대한 입법예고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 학자금대출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이면 상환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대학재정장학과)

학자금 대출 이후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에 대출원리금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19.12.5.~'20.1.15.)으로 시행령 공포 이후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 사립대학교 이사회 회의록 공개

질의

사립대학교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사립대학정책과)

「사립학교법」 제8조의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개월간 이를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인사 · 복무

25 명예교수규칙 해석 관련

질의

- 대학 명예교수 추대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8-12-05(고등교육정책과)

「고등교육법」 제17조(겸임교원 등)에서는 학교의 장은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명예교수규칙」 제3조(자격)에서는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사람으로서 그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 업적이 매우 커 다른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는 학교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고 있는바, 명예교수로 추대되기 위해서는 퇴직 당시에 학교의 장인 총장 또는 학장이거나 교수이어야 하며,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퇴직하는 교원은 명예교수로 추대될 수 없습니다.

26 교육공무원 성범죄 징계시효 관련 질의

질의

교원의 성범죄 징계시효 연장(5년→10년)에 따르면 개정 전 기존 징계시효가 마련된 사건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회신

2018-12-06(고등교육정책과)

2018년 4월 17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 ③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동법 부칙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동법 시행일(2018.4.17.) 이전에 징계시효(5년)가 완성된 사안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없고, 아직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됩니다.

27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관련 문의

질의

국립대 교원 및 조교 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9-01-29(고등교육정책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은 호봉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근무연수가 5년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사립대학 교원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회신

2019-02-01(고등교육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에서 임용권자(학교법인)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휴직 시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의 교원 인사관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3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외국인 교원 임용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9-03-06(고등교육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2조(자격)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2(외국인 교원)에 따라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의 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육·연구경력을 최소 4년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석사·박사과정 재학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해당기간을 연구실적연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며, 학위를 국내에서 취득했는지 국외에서 취득했는지 여부는 대학 교원 자격 충족 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위의 기준은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사항인바, 각 대학에서는 정관·교원인사 규정 등에서 교원임용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임용하고 있사오니, 대학 교원 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의 교원 채용 담당부서(교무과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를 제한하는 제도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신

2019-04-17(고등교육정책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등)에 따라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 인원의 3분의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도 말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의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 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 통산하여 적용하며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퇴직자도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1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관련 문의

질의

복수의 박사학위 취득 교육공무원(대학 교원)에 대한 초임호봉 획정시 경력 인정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9-09-02(고등교육정책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대학원에 다닌 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3. 유사경력-나.연구경력-4'에 따라 학령(학력)이 아닌 경력으로 계산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 시 각각의 기간에 대해서 연구경력으로 10할을 인정합니다.

32 사립학교 교원 퇴직 관련

질의

사립대 교원 재임용 여부 통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회신 2019-09-03(고등교육정책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서 임용권자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재임용 심의를 받아야 하는 교원에게 임용기간의 만료와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 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통지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국립대학 교원의 겸직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9-11-13(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의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①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②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공무원이 영리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계속성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계속성의 판단 기준은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주기는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또한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회적인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행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면 영리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교원의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교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교육공무원 조교 업무대행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9-11-21(고등교육정책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업무대행수당의 지급대상은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의2제1항 및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경우로 한정)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며, 교육공무원 조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에 업무대행자 또는 업무대행수당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므로 업무대행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전화민원

35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

질의

현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대학교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데 대학 내 산학협력단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고등교육정책과)

대학 내 산학협력단도 대학 부속시설로 교사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직원도 모두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해야 합니다.

36 시간강사 계약 시 개인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질의

모 대학의 시간강사로 출강을 하고자 하는데 해당 대학에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임용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데 개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고등교육정책과)

겸임교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등록증 제출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강사 임용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대학의 강사지원자격에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심사위원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최종 임용될 수 있습니다.

대입제도

37 외국인특별전형 지원자격

질의

맞벌이 부모인데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였을 경우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회신

2019-09-23(대입정책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2% 이내)은 부모 중 1인 이상이 해외 근무/사업/영업 등을 함으로써 근무자와 그 가족 모두 부득이하게 해외에 3년 이상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외근무자 자녀의 국내 학교교육 결손을 보정하여 근무자가 안심하고 해외근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 모두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전형별 공통요건 적시)은 '교육부 대표홈페이지 > 대학(원)정책'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후, 주소지를 옮겨도 자격에 충족 되나요?

회신 2018-05-10(대입정책과)

농어촌 특별전형(유형I)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①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를 재학하고 ② 동 기간 동안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학에 따라 지원 자격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음

농어촌 특별전형의 수시모집 합격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전세권 확정 등을 위해 대학 근처(농어촌 지역 외)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형료 환불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9-11-07(대입정책과)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에 따라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하고,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라 잔액을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은 입학전형료 반환사유 및 금액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질의

면접 일정이 중복되는데 교육부에서 대학 간의 면접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주세요.

회신

2019-11-14(대입정책과)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4조의5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의거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들과 협의를 거쳐 매년 모집시기별 선발일정을 정하며, 각 대학은 이 일정을 준수하여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험생들의 대입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일 등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시간 내에 실시되는 수시전형의 면접·논술·실기고사 등은 고등학교 학사 운영 및 일정을 피해 많은 대학들이 주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정 대학 간의 시험일정이 부득이하게 겹칠 수 있으며, 4년제 일반대학의 지원자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 우리 부가 일괄적으로 일정을 조정 또는 강제하는 것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학생부종합전형은 불공정하므로 정시를 확대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회신

2019-12-05(대입정책과)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 조정과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11월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학종과 논술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서 폐지하고 자기소개서 및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 대표 홈페이지 및 교육부 블로그(www.blog.naver.com/moeblo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민원

42 이중등록 위반 여부

질의

A대학에 합격하여 예치금을 넣은 상태에서 추가 합격한 대학에도 예치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등록 포기 신청을 하고 바로 추가 합격한 곳에 예치금을 납부하였는데 문제가 될까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먼저 합격한 A대학을 등록포기 신청한 후, 추가 합격한 곳에 납부하면 이중등록이 아닙니다. 이중등록은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경우로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43 수시 합격 후 정시 복수지원 금지 관련

질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각종학교 수시에 합격했는데 정시 지원 가능한가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대학(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에서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을 하면 정시지원은 불가하지만, KAIST, 경찰대학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과 각종학교는 수시모집에 합격해도 정시모집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의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으로 2021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현재 특성화고교 2학년 학생입니다. 2020학년도 대입과 2021학년도 대입에서의 기준학과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기준학과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습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의 경우 지원대학의 모집단위에서 지정하는 기준학과와 지원자의 특성화고 출신학과가 동일계열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마다 동일계열 기준이 다르므로 매년 지원대학에서 발표하는 '특성화고교 출신자 모집단위별 동일계 기준학과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원자의 특성화고 기준학과와 대학 모집단위가 동일계인정학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학과에 대한 정보는 현재 고3의 경우(2020학년도 대입) 2009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고2의 경우(2021학년도 대입)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과 대교협 및 시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시도교육청별 특성화고 기준학과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수시 접수횟수 제한 관련

질의

대입 수시에서 6회를 초과하여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 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수험생이 6회를 초과해서 원서를 접수한 경우, 위반 검색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게 원서 접수시간 순서상 6회를 초과한 접수에 대해 학생에게 통보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사전에 안내를 했음에도 6회 지원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입학이 무효가 됩니다(전문대, 산업대는 해당 없음).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전산에 입력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창구 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이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한 시각,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대학에 우편이 접수된 시각을 기준으로 초과 지원 제한을 하게 됩니다.

46 EBS 연계교재 사용연도 관련

질의

지난해의 EBS 연계교재로 수능을 공부해도 되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2021학년도 수능 시험에 연계되는 EBS 수능 연계교재는 당해 연도에 발간되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간되는 EBS 수능연계 교재로 2020년도 11월에 있을 2021학년도 수능시험에 대비하여 공부하시면 됩니다.

47 2021학년도 수능 범위

질의

재수생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대입정책과)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하며(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그 외 영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교과서는 2018, 2019, 2020년판이 범위입니다.

V

평생교육



1 교습소 강사 채용 가능 여부

질의

학원법 14조 5항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라고 되어있는데 이 법률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 말에 의하면 겹치는 시간만 없다면 두 명이 가르쳐도 되는지 아니면 아예 선생님을 쓰지 못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회신

2018-12-26(평생학습정책과)

교습소 제도의 취지는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기술, 예능 등을 교습하려고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학원과 차별화하여 198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인 1과목 1개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교습의 특성 상 강사 채용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습소는 학원에 적용되는 시설기준과 규모 측면에서 다를 뿐만 아니라, 교습자 1명이 1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학원과 다르며, 비교적 다수의 학습자에게 강사를 고용하고 교습을 해야 하는 ‘학원’과는 달리 교습소는 교습자가 소수의 학습자에게 예외적으로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습소에 강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상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현장에서의 임시교습자 또는 보조요원 채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과외교습 행위 문의

질의

고등교육기관(사립대학)의 교원이 금전취득을 목적으로 타 대학원생(박사과정)에 자신의 전공분야를 과외교습한 경우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법 해석(범위반 유무, 벌칙 등)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9-01-28(평생학습정책과)

귀하의 말씀처럼, "학원법" 제3조를 통하여 교원의 과외교습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말하는 '과외교습'은 동법 제2조 제4호를 통하여 구체화할 수 있는바 -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교원이 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는 "학원법" 제3조에 따른 교원의 과외교습에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학원법 제22조제2항 벌칙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질의

우리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80호)에 따라 지정된 비계, 거푸집 등 기능습득교육기관이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입니다. 본원과 같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학원법 제6조에 의한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계 또는 거푸집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

2019-01-28(평생학습정책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호에서는 학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 바, 이 중 마목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의 범주에서 제외되므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질의

외부의 업체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MOU를 체결하여 지자체의 영어사업을 위탁받아 사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초중등 대상(학원법상 학원등록이 필요한 과목)의 과정도 개설 할 수 있나요?

회신

2019-03-10(평생학습정책과)

외부사설업체가 지자체 교육사업에 공모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행,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 단서 조항에서는 각급 학교(대학 포함)의 장이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는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외부사설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현행, 「학원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2017년 교육부는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 을 마련하고, 학교(대학 포함)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와 업무협약 체결 후 실시하는 어학캠프에 한하여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유아를 대상으로 입시·검정 및 보습분야 보통교과 계열의 교습과정을 운영할 수 있나요?

회신

2019-09-04(평생학습정책과)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만 3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현행, 「평생교육법」상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문화센터 등)에서 영아(만 3세 미만)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학원법」 상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또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과정은 학원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시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강좌는 법령상 제한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학원 선행학습 금지 요청

질의

선행학습 금지법을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9-04-11(평생학습정책과)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학원의 선행학습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현행 법률은 없습니다. 학원의 기능이 학교 수업에 대한 보충적 기능도 있지만, 선행학습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사적영역에 있는 학원의 경우에도 공교육 기관인 학교와 같이 선행학습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사항은 헌법상 기본권인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격발현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학원의 경우에는 관할교육청의 지도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만으로도 내실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 유학원 등록 문의

질의

유학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무슨 법령에 의거 어디에 등록을 해야 하는가요?

회신

2019-05-01(평생학습정책과)

유학원은 교습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서비스를 '알선'하는 곳으로서 「학원법」에 따른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에 등록을 한 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유학원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자유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임을 알려드립니다.

8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 시 예금 압류 및 추심 가능 여부

질의

학원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은행에 예금 조회, 예금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9-09-05(평생학습정책과)

학원법 위반에 따라 발생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예금압류, 추심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바랍니다.

질의

한국장학진흥원, 한국장학평생교육원, 한국평생학습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이 '믿을 수 있는 국가자격증', '국가가 인정해 주는 자격증'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격증을 받으면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9-01-18(평생학습정책과)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기관의 자격은 모두 국가 이외의 개인·단체·법인이 운영하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이 아닙니다.

'등록민간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며, 그 중 소수는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단,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기관들의 자격은 모두 공인받은 자격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취업 보장", "고소득 가능", "채용 가산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경우 거짓 또는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관리자의 광고만을 신뢰하지 마시고 취업 희망 기관이나 회사 등에 해당 민간자격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 취득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본교 평생교육원에서 인근 도시지역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직영)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교외에서의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한지 문의하며 가능하다면 시설승인 절차 등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신

2019-04-03(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은 인가받은 학교 내(강의실)에서만 운영 가능하나, 부득이 지역민의 일시적인 교육수요에 의해서 교외에 임차시설을 이용할 경우, 공공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간의 임차로 인한 과도한 영리추구 등으로 학원 등 타 시설에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운영 시 참고사항 알림, 2014.3.).

전화민원

11 학점은행제 학위 관련 질의

질의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한 것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9년 전화 문의(평생학습정책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 제2조제2호는 학점은행제의 학위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제1항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함을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으며,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전문)대학의 학위와 같은 수준의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 전환된 자격증 재교부 신청 문의

질의

대학을 졸업할 때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을 발급받았습니다. 현재 재교부는 어떻게 받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법」부칙 제13조 및 「평생교육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2000년 3월 13일 이전의 「사회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한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은 평생교육사 2급으로,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은 평생교육사 3급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13 학점인정 부정 취득 시 취소 통지

질의

학점인정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취소 통지를 받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학점인정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학점취득이 확인되어 학점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부여, 처분 통지 등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알리게 됩니다.



질의

교습소 보조요원이 학습자로부터 받은 간단한 해석이나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는 활동인가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019. 1. 25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했던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가이드라인」에서 '보조요원의 채용 사례(p1)'로 설명된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공문으로 다시 안내한 내용입니다.

※ (가이드라인)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자를 보조하는 활동

⇒ 공문안내(2019. 5. 21) : 교습자와 함께 동일한 강의실 내에서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가능함

질의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학위는 어디서 받으니까?

회신

2019년 전화문의(평생학습정책과)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의 2가지 학위수여방식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명시된 학위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신청절차를 거치는 경우,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를 취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http://www.cb.or.kr>) 또는 콜센터(1600-0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과 대학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해당대학의 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경우, 학위수여 가능여부 및 세부요건 등을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대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교육

16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전담노무사제 도입 관련 질의

질의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사용자측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전담노무사로서의 독립적이고 확고한 권한 부여 및 그에 걸맞게 전담노무사가 비위행위를 한 것이 발각된 경우 매우 강력하고 엄정하며 높은 수위의 처벌 및 법적 제재를 가하는 기준 명시 등을 꼭 이번 개정법령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9-02-27(중등직업교육정책과)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19.1.31.)을 통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전담노무사는 학교에 상주시키는 인원이 아니며, 학교별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기업체 점검과 상시적 상담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생이 근로권의 침해로 당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학생을 보호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담노무사의 권한과 의무, 책임, 비위행위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전담노무사가 일방적으로 기업의 편에 서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고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돕기 위한 현장실습 제도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질의

공립학교 특성화고 취업지원관은 2년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지요?

회신

2019-03-28(중등직업교육정책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의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립학교 취업지원관이 계속 근로하려면 소관 기관인 소속 시도교육청의 인력관리위원회(예시)등에서 무기계약직 직종으로 심의·의결 받아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취업지원관(교육공무직 또는 학교회계직)인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시도교육청(감)의 사무라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취업지원관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확대 배치를 위해 17개 시도 교육감님 면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인력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시도교육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질의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문이 좁아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회신

2019-04-04(중등직업교육정책과)

가정 형편으로 인해 취업을 원하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마이스터고를 지원하였으나 취업 여건이 어려움에 따라 취업 확대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진학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입시경쟁 및 사교육 유발, 과잉학력 양산 등을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졸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19.1.25)'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여 고졸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양질의 고졸일자리 확대 및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여 고졸 후 취업해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은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교육체계 및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취업 시점에서는 공공부분 고졸채용 확대, 기업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지역 일자리 및 해외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를 통해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고졸 우수 인재인 학생들이 취업 후에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 등을 통해 초기의 사회적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취업 이후에도 후진학을 위한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염려하신 것과 같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졸업 후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발되기 위한 신청 기한, 서류심사 제출처, 심사기관, 선발 절차 및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9-06-13(중등직업과)

현장실습 선도기업 신청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까지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되는데,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 절차를 고려한다면 가급적 여름방학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련 서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에서 작성), 현장실습 산업체 방문조사 카드, 4대보험 가입 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입니다.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선도기업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교육청에서는 산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한 이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1588-37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자격 및 선발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회신

2019-07-05(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3학생(졸업예정자)에게 취업과 연계하여 취업 활성화 및 선취업 학생에 대한 사회정착금 마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예시 : 성실성, 취업의지, 우수성, 지원 필요성)을 마련하여 시도별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선발 기준을 통해, 시도별 학생 수, 중소기업 취업률, 취업계층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선발 인원을 배분하고 장려금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18. 12월). 심사 및 지급 절차는 근로계약서, 취업약정서, 재직 증명서 등 취업여부 확인 증빙서류 확인 및 학부모 동의 이행보증보험 필수 가입(부정 수급 방지 및 의무종사기간(6개월) 이행 확보를 위한 환수 조치 마련)을 통해 완료된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사회적 자립을 돕고 고졸 성공 확산을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의 본질적 취지에 대해 공감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VI 기타



기타

1 논문 표절 검증 요청

질의

○○대학교 ○○○ 교수의 A 논문이 B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9-07-29(학술진흥과)

논문 등 연구결과물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에 따라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어, 해당 기관에서 동 지침의 검증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한해서 대학 등의 판정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장(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8조(재조사)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5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논문 집필 자격요건 개선

질의

논문 집필 시 학력, 전공 등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여러 분야에서 기술 발전을 저해하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회신

2019-10-07(학술진흥과)

일반적으로 논문 게재는 논문투고 자격을 충족하여 논문을 투고하고 이후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게재하게 됩니다. 논문투고 자격은 학회의 회원들에게 주어지므로 투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 학회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학술단체들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보급하고 있는 JAMS(논문투고심사시스템)를 사용하고 있고, JAMS에서는 학회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는 필수지만 그 외의 학력정보 등은 필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 투고하려는 학술지가 민원 내용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디다만, 만약 특정 학회에서 회원자격에 학력이 필수 값이어서 논문 게재에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각 학회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이고 그에 따른 학계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점을 양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부실학회 여부 확인 요청

질의

부실학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검색기관이나 리스트, 또는 IJASET(<http://iraj.in/journal/IJASEAT>)이 웹의 학회지가 부실학회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9-03-26(학술진흥과)

전 세계 수많은 학술대회와 학술지가 부실한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신생 학술단체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서 해외 선진국 정부기관에서도 가이드 배포 등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특정 학회지의 부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드리기는 어려우며, 부실 학술대회와 학술지의 특징 및 예방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 그간 발간·배포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1. 약탈적 학술지와 학회 예방 가이드
2.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3. 부실학술활동의 주요 특징과 예방 대책

질의

지역민들의 독서/면학여건 보장 및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대학 위상 제고 등을 위해 24시간 개방까지야 힘들다 하더라도 평일 자정까지 또는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방해주세요.

회신

2019-07-10(학술진흥과)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시설 및 도서관 자료를 개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대학도서관진흥법 제7조 제2항)

대학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6조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칙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대부분의 국공립 대학 도서관이 각 대학도서관이 처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지역 현실에 맞게 주민들에게 자료 및 시설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학도서관의 예산과 자료가 한정되어 있는데 일반인에게 도서 대출을 허용하면,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도서를 대학구성원이 열람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도서관의 열람실 좌석수가 대학구성원이 이용하는데도 부족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대학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의 열람실 이용을 제한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방여부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외국인학교 교원의 자격 및 외국인학교의 설립자격이 궁금합니다.

회신

2019-05-28(교육국제화담당관)

외국인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학교로서, 다른 초·중등학교와 달리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 중 동법 제21조의 교원의 자격 부분도 배제되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제7호에 따르면 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학칙은 동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외국인학교의 교원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 규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설립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학교는 ① 외국인, ② 비영리 외국법인, ③ 국내 학교법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립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조에 따라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 기준 등의 설립 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릅니다.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조건을 갖춰 시·도교육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

국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대학 학력 인정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회신

2019-11-11(교육국제화담당관)

국내의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에 의거하여 설립·승인되며, 우수한 외국학교(본교)의 교육과정, 학사제도 등을 그대로 구현하는 분교(캠퍼스)를 국내에 설립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질의

재외한국학교 고용휴직 교사 입증서류 제출 관련, 한국 교육부에서 인가한 재외한국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문서를 해외공관장의 확인이 없어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2019-01-14(재외동포교육담당관)

교육공무원 고용휴직의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 실무」에 따라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의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를 휴직사유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지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가 시급합니다.

회신

2019-10-29(양성평등정책담당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방지법, 학교안전법 등

이러한 교육에는 건전한 성의식,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학부모 연수 및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자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부의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 '성폭력 예방' 교육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On누리사이트'를 통해 성교육 방법,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과정 운영 중

귀하께서 제안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참고하도록 하며, 앞으로도 성폭력 예방 교육뿐 아니라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성희롱 성폭력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학교에서 발행하는 인명부에 전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아주 상세히 기재되어있어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름, 휴대폰번호 뿐 아니라 주소, 이메일 주소, 회사, 직급까지 너무나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러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개 및 제3자 제공은 위법으로 알고있어 발행 중단 및 전량 회수를 요청합니다.

회신

2019-07-16(교육정보화과 정보보호팀)

대학교 총동문회에서 발간한 인명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연관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처리자(대학)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 3항).

※ 법 제15, 30, 31조 주요내용 :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다만, 친목단체의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최소수집 원칙(법 제3조), 정보주체의 권리보호(법 제4조),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법 29조), 등의 규정은 모두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목 도모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근거하여 회사, 직급 등에 관한 정보까지 인명부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판단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

학교 졸업앨범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사진 등을 관행적으로 넣고 있는 등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이 심각합니다.

회신

2019-07-16(교육정보화과 정보보호팀)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취급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①정보주체 동의를 받거나 ②법률규정 준수를 위하여거나 ③공공기관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교직원 등 해당

** 학생, 학부모 등 해당

학교 졸업앨범은 위에서 말씀드린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한 ①~③ 중 ①에 해당하여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 제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용되는 개인정보 대상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해당하여 위에 설명 드린 대로 학생과 교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졸업앨범 제작은 학교별 개인정보처리자·취급자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제작방식 등은 학교별 자율 선택가능하며, 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에 따라 졸업앨범 제작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이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질의

국립대부설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각종 납부금의 카드납부가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회신

2019-08-07(예산담당관실)

지난 3월, 우리부에서는 학부모부담금에 대한 공·사립학교의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국립부설학교에서도 학부모님의 수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국립부설고등학교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국립부설고등학교 학부모부담금 카드수납 관련 교육 실시(7.3.)

올해 2학기부터 국립부설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카드 수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예산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2학기부터 국립부설고등학교에서도 학부모님께서 제기하신 학부모부담금 카드수납 관련 사항이 처리가 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별학교에 따라 학교 예산시스템 정비 및 카드사와의 협의 등의 행정절차 진행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 학교 홈페이지 내용 이용

질의

학교 홈페이지의 내용을 비영리/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

2019-06-25(운영지원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한 저작물 및 상표(로고 등)는 해당 학교 또는 저작자(저작물을 만들거나 상표를 개발한)가 개별적으로 저작권 및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이용범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해당 학교에 필요한 저작물 또는 상표의 저작권자를 확인하셔서 저작권자에게 직접 이용허락동의(비용 발생 가능)를 받는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13 어디서나 교육민원(팩스민원)의 신청대상 여부

질의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3조 민원사항의 종류 <별표1> 23번에 ‘기타 증명 및 확인’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인이 근무하던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졸업앨범의 본인 사진이 팩스민원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회신

2019-08-30(반부패청렴담당관)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간 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법정민원으로, 졸업앨범 사진은 법정민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외부강의 사전신고 제외 대상 기관 판단 여부

질의

교육부에서 총괄하고 국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연수에 강사로 참여할 경우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회신

2019-01-10(반부패청렴담당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제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권익위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①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국립대학교, 국회, 법원 등'이며,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교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단서의 외부강의등 신고 제외 대상인 '국가'에 포함되므로 외부강의등 신고가 제외됩니다.

질의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운영위원이 돈을 각출하여 고3 수험생을 둔 다른 운영위원에게 자녀의 수능 선전을 기원하는 선물로 각각 3만원 상품권을 전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회신

2019-02-28(반부패청렴담당관)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 등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금품등의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지만, 금품등의 제공자와 제공받은 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예외사유인 사교, 의례 등 5만원 미만의 선물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 여부는 수수의 동기와 목적, 당사자의 관계,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내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며, 상품권은 법률에서 선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해당 고등학교 소재 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징계 등 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

교육부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립대학교병원 소속인 직원(공무원 신분이 아님)도 상기 위원회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 대상이 되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인용이 안되어 불복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할 소재지 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에 제소하는게 맞는지 여부 (3) 소청심사위원회 청구 대상이 아니라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야하는건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

2018-12-11(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청구인은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이므로 국립대학교병원 소속직원(공무원 신분 아님)은 청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 기관 소속직원의 경우 노동위원회 소관 여부 등에 대해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역사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 시대에 관한 유물이나, 책 같은 것을 보고 그 시대에 생활이 이랬구나 추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증거물을 보고 그때 역사는 이랬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가, 나중에 다른 증거물들이 나오면 원래 알고 있던 역사가 나중에 나온 증거로 인해서 정정될 수도 있나요?

회신

2019-03-20(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역사가는 그 시대의 역사상을 담고 있는 '사료(史料)'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역사를 서술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에 관한 유물이나, 책 같은 것”이 바로 '사료'에 해당하며,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고 해석하기 위한 가장 원천적인 재료입니다. 그러나 옛 기록이나 유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당시의 진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록의 경우에는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의도적인 왜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이 아무리 객관적인 '진실'을 담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처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두 가지 사료에서 나온 내용만을 믿고 그대로 역사를 해석한다면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나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를 최대한 섭렵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구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사료비판'이라고 하며, 역사 연구를 위해서 누구나 거쳐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면 기존에 알고 있던 역사적 '사실'이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사료가 많지 않은 고대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워낙 제한된 사료로 연구하고 해석하다 보니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교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었다고 해서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굴된 사료가 당대에 작성된 것은 맞는지, 위조된 것은 아닌지 등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등을 밝혀내고, 기존 사료와 비교하는 작업 등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명백한 사실의 오류가 정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새로운 사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새롭고 풍부한 역사해석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질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 중인 정보 중 <경성부 정내지 인물과 사업안내> 자료의 소장처 및 접근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회신

2019-03-07(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귀하께서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 인물자료>DB에 사용된 [京城府町內之人物と事業案内]라는 자료의 출처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한국근현대 인물자료> DB는 국사편찬위원회는 물론 국내 주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중 근현대 인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DB로 구축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료는 현재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청구기호 : 희귀 953.060922 1921).



질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우리역사넷 책으로보기 창에서, 인물별로 클릭해서 내용을 출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클릭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운로드하면 이런 형식의 파일을 열 수 없다고 하네요.



회신

2019-06-21(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귀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역사넷<교과서 속 우리역사>재미있는 초등역사 코너에서 '책으로 보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시점에서도 크롬 브라우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익스플로러로 접근하면 기능 구현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 담당부서에 전하여 현재는 모든 기능이 잘 구현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책으로 보기'를 통해 바로 웹북 형태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셔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의

18년도 군무원 채용 원서접수기준 18.6.7.(목) ~ 6.12.(화)로 비슷한 시기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2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공지된 19년도 군무원 채용일정이 4월까지로 공지되어 현재 한국사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저로서는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청사항입니다.

1. 1회 시험(1.26.)에 추가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늦어도 4월초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1회와 2회 중간에 시험을 추가로 시행 요청드립니다.

회신

2019-01-22(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2019년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지된 바 있어, 이를 변경할 경우 응시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위원회는 운영 인력, 예산 등의 부족으로 연간 4회를 초과하는 시험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으로는 추가 접수 또는 추가 시험의 실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후 급수체계의 개편, 인력 보강 등 시험 횟수 확대를 위한 여러 여건이 충족된다면, 내년 시험 일정 수립 시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현재 토익의 경우처럼 추후 한국사 시험 또한 동일하게 모바일을 통해 접수가능토록 개선하여 주실 것과,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응시 가능토록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회신

2019-03-12(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먼저 모바일을 통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년도부터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응시자격으로 (2급 이상 합격), 2013년부터 교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3급 이상 합격) 활용되면서 국가고사와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모바일 본인인증 및 전자결제 과정 등의 철저한 보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이 이루어지기 전 모바일 접수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모바일 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무료 응시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일반 국민의 한국사 전반에 대한 사고력 향상이라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목적을 고려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되, 전년도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인건비 및 각종 물가 상승분 등을 검토하여 응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수료는 시험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추후 수수료 인하 여력이 생길 경우 귀하의 의견을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응시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으며, 약 4만원 내외인 어학 시험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수료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질의

이번에 수원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려고 합니다만, 수원에 있는 모든 장소가 정원이 꽉 차 있어 임시시험장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시험 본 정원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시험인원을 너무 작게 잡아두고 장소를 마련한 것, 학교별 응시자 정원을 너무 적게 잡았고, 모바일로 시험장소 현황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석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전전긍긍해야 한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회신

2019-07-23(국사편찬위원회 기획협력실)

현재 제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자의 이례적인 급증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시험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험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설공사, 방학 기간 중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의 사유로 많은 학교들이 시험장 대관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한 개 시험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모바일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스템 분석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응시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국비연수기간 연장 가능 여부 문의

회신

2018-12-28(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합니다. 다만, 국립국제교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기능인 전형 국비연수생의 연수기간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비연수 기간의 연장 여부는 연장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연수태도, 연수성과, 국가 발전 기여도, 예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내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2020년 9월 일본에서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 2019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 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신 2019-02-11(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국내 대학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또한 국비유학생 시험합격의 효력은 합격자 공고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9월까지이므로 귀하께서는 금년도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비유학생 선발 시험 공고에 관련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www.niied.go.kr)-교육원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선발 공고는 4월 예정입니다.

질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유학제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교육공무원(교사)의 경우도 국비 유학제도가 적용되는지
2. 교육공무원(교사) 국비 유학제도가 있다면 지원자격 및 기준
3.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한 유학(ex. 외국정부초청장학생)이 국비유학에 포함되는지
4. 국립국제교육원 혹은 기타 타 부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유치원 교사)을 대상으로 하는 유학 제도 혹은 교사 파견·교환 제도가 있는지

회신

2019-06-10(국립국제교육원 글로벌인재양성부)

- (1) 저희 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비유학생 선발파견 사업은 공무원, 교사, 일반인, 학생 등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 (2) 국비유학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당해년도 8월말 졸업예정자
 - * 독학자,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자 응시가능
 - 대학 평균성적이 만점의 80%이상인 자
 - 일정수준의 영어 및 한국사 능력이 있는 자
 자세한 내용은 국비유학생선발파견사업 공고문(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9.4.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정부초청장학생 사업은 국비유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4)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파견 및 교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 * 단, 교원해외진출사업을 통해 초중등교사를 개도국에 파견하는 사업 추진 중

26 한국어능력시험(TOPIK) 고사장 확대 요청

질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험 고사장 수 확장 요청 민원

회신

2019-09-06(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

TOPIK사업단은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전국에 시험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2018년도 48개→2019년도 54개). 그러나 아직도 지원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TOPIK사업단은 시험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60개 이상의 시험장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이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민원

27 교육부 『행복한 교육』 배포 문

질의

교육부가 발행하는 『행복한 교육』을 개인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홍보담당관)

「행복한 교육」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을 비롯해 도서관, 주민센터, 보건소, 농협, 개인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받아보고 싶은 개인은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시면 책을 배송해 드립니다. 모니터단은 매달 한 번씩 책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셔서 온라인으로 피드백해주는 활동을 하게 되며, (02) 2271-0992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8 국제학교 인가 문의

질의

국제학교가 교육부에 인가된 곳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국제화담당관)

근거법령에 따라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 세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 종합안내 사이트(<https://www.isi.go.kr>)’에서 인가된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 국제학교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9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률 관련 외국교육기관 임용 제한 여부

질의

국내 학교의 경우, 성범죄자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국내에 소재한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도 그런가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교육국제화담당관)

외국교육기관이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을 교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교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741호)이 2019.12.10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30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학부모가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질의

고등학교의 학부모들이 돈을 각출하여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감사패(10만원)와 꽃(5만원)을 선물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고 위 사안은 공직자인 교사에게 직무관련성이 높은 학부모가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금품등을 수수한 교사뿐만 아니라 금품등을 제공한 학부모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공직자 등이 민원인과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민원인이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 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회신

2019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는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이내입니다.

질의의 경우 공직자 등과 민원인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 등이 지불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수수등이 인정되지 않고 형법상 뇌물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청탁금지법에는 부정청탁과 관련하여 14가지 대상직무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가지 대상 직무외의 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

2019년 전화문의(반부패청렴담당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호에는 부정청탁과 관련한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 외의 청탁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청탁행위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및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등에 따라 규율되므로 부정청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VII 민원처리 관련 법령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 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4)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처분"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의 처분을 말한다.

5.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6.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

8. "무인민원발급창구"란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3호가목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 제37조, 제38조,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①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가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은 원래의 민원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 및 접수·처리 과정에서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실의 설치)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에 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민원인에게 민원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교부의 절차 및 접수·처리·교부 기관 간 송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접수·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連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효율적인 처리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와 통지 등

제27조(처리결과와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절 법정민원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등) ①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가 청구된 법정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실무기구의 운영
4. 제3호의 실무기구의 심의결과에 대한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5. 행정기관의 장의 최종 결정

제33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통보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⑥ 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고 받은 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0조(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①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회의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 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민원의 실태조사 및 간소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의 처리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행정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의 개선 상황과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결과 민원의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3조(행정기관의 협조)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민원 관련 자료수집과 민원제도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44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민원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여론 수집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459호, 2015.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는 이 법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4항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실"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로 한다.

③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사무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있는 민원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제1항·제2항, 제43조 및 제44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시행 2019. 6. 4] [대통령령 제29799호, 2019. 6. 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담당자의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처리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를 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하거나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부수는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8조(다수 민원인 중 대표자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민원문서를 연명(連名)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의 성격,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3명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대표자 수를 민원인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청 받은 3명 이상의 민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민원인 중 3명 이내를 대표자로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민원의 민원인으로 본다.

제9조(민원실)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따른 민원편람(이하 "민원편람"이라 한다)을 열람(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을 포함한다)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민원편람을 비치하거나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편람에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기관·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에 관한 안내에 필요한 사항(법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실에 게시하거나 민원편람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는 민원
2. 제5조에 따라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3.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민원의 신청·접수, 민원문서의 이송 및 처리결과와 통지
2.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예정일 등 민원의 처리상황 안내
3. 법령, 민원편람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 등 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접수기관"이라 한다)는 그 민원을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접수기관이 소관 행정기관으로부터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신청서·구비서류 등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교부하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민원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인이 동시(같은

근무일에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동일한 증명서 등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는 제외한다)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처리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⑥ 민원인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비 등 추가비용을 교부기관에 내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 기관 및 추가비용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협이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장과 협의하고, 새마을금고가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⑧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이 다른 둘 이상의 민원을 통합하여 신청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⑨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된 민원은 그 민원의 소관 법령에 따라 각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통합하여 접수한 민원 중 다른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선행적으로 완결되어야 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행 민원이 완결되는 데 걸린 기간은 다른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가 제8항에 따라 통합하여 접수·교부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접수·교부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19. 6. 4.>

제13조(민원문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①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문서를 이송받은 행정기관은 민원문서를 이송한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행정기관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민원인은 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 등의 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과 관련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의 장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감독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존중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제18조(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①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보낸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민원 처리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직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6. 4.>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26조(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분석하여야 한다.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민원심사관의 업무를 나눠 맡도록 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29조(처리결과의 통지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의 경우
2.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개정 2016. 4. 26., 2017. 7. 26.)

1. 삭제 <2019. 6. 4.>
 2. 위조·변조 방지조치
 3. 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 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32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략하고 해당 기관의 관인을 찍어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또는 그 민원의 성질상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 민원문서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관인을 찍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발급할 때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령에서 특별히 본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추가비용과 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등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민원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제4절 법정민원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안내)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이하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기간·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①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법 제20조, 이 영 제6조,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처리기간
2.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30일 이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구비서류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사전심사의 청구 후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주무부서에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종류와 접수방법·구비서류·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36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 명칭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행정기관의 장의 최종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41조(민원제도의 개선)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민원제도 개선 추진 계획 및 경과
2. 개선 내용 및 실적
3. 개선에 대한 완료시점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안을 통보한 경우
2.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개선을 권고한 경우
3.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에서 심의·조정된 경우

제42조(조정회의의 기능) 법 제40조제2항에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제39조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 개선사항
2. 행정기관의 미이행 또는 미개선 과제에 대한 심의 및 이행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제도 개선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조정회의의 구성 등) ① 조정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조정회의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제44조(조정회의의 의견 청취 등) ①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참고인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의 요구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 조정회의의 위원장은 조정회의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6조(조정회의 위원장의 직무대행) 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조정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조정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8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관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이해관계인,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9조(확인·점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중 처리기간의 경과, 구비서류의 추가 요구 및 부당한 접수 거부 등 경미한 사항은 법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0조(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51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 수집)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하려는 경우 효율적인 여론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민원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의 장은 민원을 접수·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53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22조, 제29조제1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9799호, 2019. 6.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6. 3] [행정안전부령 제121호, 2019. 6.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3조(민원의 접수)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병무(兵務)·인감·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민원실,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제4조(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같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간 관련 서식)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8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한다)·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제9조(민원문서의 보완요구) ①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이의신청 관련 서식)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121호, 2019.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교육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시행 2018. 9. 3.] [교육부훈령 제270호, 2018. 9. 3.,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접수된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교육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민원인"이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민원관리부서"란 교육부와 관련한 민원의 상담·접수·분류·관리와 민원 관련 행정 및 제도에 관한 운영·개선 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민원처리부서"란 민원관리담당자가 분류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담당관·팀을 말한다.
5.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6. "민원상담센터"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상으로 민원실의 역할을 담당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인의 정보보호) ① 민원을 관리 또는 처리하는 자(이하 '민원처리담당자 등'이라 한다.)는 민원의 처리 또는 이첩과정에서 알게된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사생활 또는 경영상·기술상·거래상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3조에 따라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민원의 접수·처리 등

제5조(민원의 접수·분류·이송)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전화·방문·전자·서면 등의 방식으로 신청된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민원처리부서를 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내용이 타 기관 소관 사무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교육부 위임전결규정」
3. 소관 업무와의 유사성, 이전 처리 민원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원의 핵심사항에 가장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부서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을 배부받은 부서의 장은 민원 배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민원을 배부받은 시각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분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부서를 재분류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분류 요청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④ 민원관리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민원관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을 배부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민원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해당 민원이 처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14일
2.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행정업무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고충민원 등 : 7일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당해 민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차례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한차례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동일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2개 이상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최소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는 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2회 이상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추가로 접수되는 동일내용의 민원에 대하여는 동일민원으로 종결처리 됨을 미리 안내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담당부서의 장은 민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유사성·관련성 및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민원처리부서의 조정 등

제9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부 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부서 민원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며, 영 제28조에 따라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을 필요가 있을 경우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처리부서를 지정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민원조정위원회) ①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3개실에 소속된 각 주무부서의 장, 혁신행정담당관, 민원관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각 1명 등 위원장 포함 총 8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① 영 제36조에 따른 사항과 민원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민원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2개실(초·중등교육, 고등교육)에 소속된 주무부서 주무 서기관 및 혁신행정담당관실의 주무 서기관(사무관 또는 연구관), 민원관리부서의 민원담당 사무관 등 5명으로 한다.

③ 심의회는 경미한 사항이나 민원처리와 관련된 실무적인 사항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이를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실·국내 민원 조정 등) 실·국장 또는 민원심사관은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민원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1.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처리부서 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소속 실·국 내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민원심사관 또는 민원실무심의회가 민원처리부서로 지정·결정한 사항을 당해 부서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처리결과의 통지 및 확인·점검 등

제13조(민원처리결과의 통지)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처리를 완료한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결과 통지는 민원인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서신(국민신문고 상 ‘e-그린우편을 통한 서신통보’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민원처리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담당자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으로 평가한 경우 성실하게 추가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영 제22조 및 제28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필요시 수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이 발견되거나 민원처리 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민원처리담당자 등에 대해 별표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의 확인·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민원 처리 및 전화민원 응대 요령 등을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민원상담센터 운영

제15조(민원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신속·정확한 상담 및 안내 등을 위해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인원(전문상담사 등)을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화상담 또는 업무안내
2.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매뉴얼을 포함한다)의 구축 및 관리
3. 전화민원 접수, 상담 동향 분석 및 관리
4. 국민신문고 민원의 접수·분류·상담 업무 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민원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 법령과 지침 등의 제·개정, 신규 사업의 추진 및 변경 등으로 민원접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전문상담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전문상담사는 상담 주요 내용을 별도 기록하고, 자주 질문하는 사항이나 매뉴얼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담사례 작성시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센터 업무의 위탁)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교육·평가 등

제17조(처리민원 사후 관리)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만족도 및 개선사항, 친절 응대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 등에 공헌한 직원의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처리담당자 성과보상)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분기별 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다수민원처리 및 만족도 평가 우수 부서(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민원처리담당자의 보호)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민원처리담당자 등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등 예방·치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70호, 2018. 9. 3.>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16호, 2019. 8. 6.,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처·청과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사원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6조·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그 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교육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조(적극행정 법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통보한 법령정비안을 검토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법령 입안의 기준과 제3항에 따른 법령 해석의 원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파해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제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중앙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법제 지원)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4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한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및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2항에 따른 포상휴가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 ② 제14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조에 따라 선발 또는 선정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징계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 및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8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7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30016호, 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인쇄일 : 2019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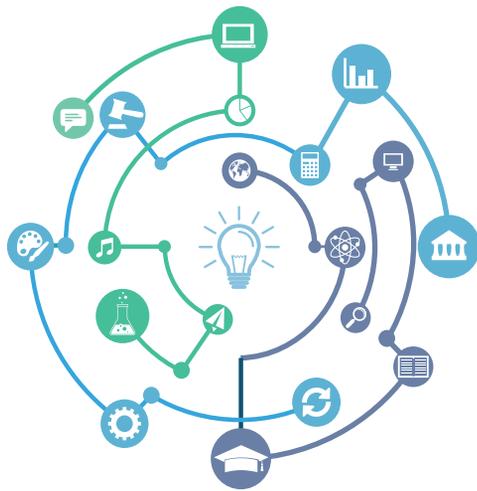
발행일 : 2019년 12월

발행처 :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우 30119)

인쇄처 :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드림사업단
(Tel. 044-862-2922)

본 사례집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국민참여·민원 → 민원신청 → 질의회신사례집)
사례집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044-203-6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
www.moe.go.kr